

2018년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신청

본 교재를 필히 숙독 후에 상호협력평가 신청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프로그램 사용료 결제 후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평가 결과 확인 및 이의신청 안내

1. 평가 결과 확인

- 금년 건설업체가 신청한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는 6월 중순경 우리협회 '건설업체 신고안내 시스템 (<http://siljuk.cak.or.kr>)'에 게재될 예정이오니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체 실적신고 안내 홈페이지(<http://siljuk.cak.or.kr>)에 로그인 후 상호협력평가 신청결과 확인'(초기화면 하단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평가 결과 및 내역에 대한 문의는 해당 평가표에 기재된 협회 담당자 문의처(02-3485-8242~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 이의신청

-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으신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 사실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협회(본회 상호협력평가팀)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 기간은 6월 중순경으로 SMS 및 '건설업체 신고안내 시스템'을 통해 별도 공지할 예정이며, 이의신청 기간 이후에는 이의사항 접수가 절대 불가합니다.

3. 기 타

- SMS를 통한 안내는 신청서상에 기재된 각 업체별 담당자 연락처로 통보되니, 담당자 부재 또는 퇴직 등으로 연락처 변경시 사전 연락 바랍니다.
- 담당자 연락처 누락 또는 미변경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평가시 변경사항

1.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임금지급시 가점 (p.65)

-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민간공사 현장 건설 인력의 임금이 지급된 경우 최대 3점까지 가점이 부여 되도록 평가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2. 전자하도급계약으로 인한 재무지원시 인지세 부담액 확인 (p.45)

- 전자 하도급계약으로 인한 협력업자 재무지원과 관련하여 신청사의 인지세 부담액이 50%이상인 경우에 한해 재무 지원 실적으로 인정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3. 종합건설업체간 상호협력 실적 평가 (p.33)

- 대기업인 종합건설업체 신청사와 중소기업인 종합건설업체 협력업자 간의 상호협력실적이 모든 평가항목에서 평가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교재 중 관련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I. 상호협력평가제도 개요	3
II. 상호협력평가 신청방법	9
III. 항목별 평가기준 및 프로그램 입력방법	17
1. 업체개요 및 작성담당자 정보	19
2. 협력업자 관리대장 작성	20
3. 공동도급 실적 평가	23
4. 협력업자와의 하도급실적 평가	28
5. 하도급대금 및 지급시기 등 적정성 평가	34
(1) 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2) 하도급대금 현금성 결제비율	
(3)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4) 전자하도급계약	
6. 협력업자 재무·교육지원 평가	44
(1) 협력업자 재무지원	
(2) 협력업자 교육지원	
7. 협력업자와 공동기술 개발 및 기술지원 평가	51
8. 상생협업체 운영실적 평가	54
9. 해외건설 공동도급 등 동반진출 실적 평가	58
10.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관련 표창 등 실적 평가	61
11. 제재처분 감점	63
12.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한 임금지급 실적 평가	65
13. 신청내용 확인·제출 및 서류 출력	71
IV. 전산 프로그램 사용상 편의 기능	75
V. 참고자료	81
<참고1>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83
<참고2> 평가 관련 기타 서식	109
<참고3> 2019년 평가시 변경되는 사항	119

I. 상호협력평가 제도 개요

1 평가목적

- 대·중소 건설업자간 긴밀한 상호협력관계 구축을 통하여 건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함

2 평가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41조 및 제44조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60호(2018. 3. 14)

3 평가기관

- 대한건설협회

4 평가대상

- 전년도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
- 전년도 대기업인 건설업자와 중소기업인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
※ 비건설업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5 평가기간

- 2019년 3월 ~ 6월

6 세부일정 및 내용

순서	내용	일정	2019년도				
			3월	4월	5월	6월	7월
1	신청서류 접수 - 소속 사도회 (회원), 본회 (비회원)	'19. 3. 4. ~3.15.	■				
2	업체별 사실확인서류 요청 및 접수 - 홈페이지(http://siljuk.cak.or.kr) 확인	'19. 4월말~5월초		■			
3	업체별 평가결과 확인, 이의신청 접수 - 홈페이지(http://siljuk.cak.or.kr) 확인	'19. 6월 중순				■	
4	최종 평가결과 발표 (국토교통부)	'19. 6월말				■	
5	“평가결과 확인서 발급” 개시 - 평가결과 우대사항 등 적용	당년도 적용시작일~ 내년도 적용시작 전일					■

7 | 평가항목 및 배점 구성

평가항목		배 점		비 고
		대기업	중소기업	
1. 공동도급 실적		<u>10점</u>	-	
가. 협력업자와 공동도급한 기성실적 건수 비율		(5점)		
나. 협력업자의 공동도급 참여율		(5점)		
2. 하도급 실적		<u>20점</u>	<u>25점</u>	
- 총기성액 대비 협력업자의 하도급기성실적 비율				
3. 협력업자 재무건전성	가. 협력업자 재무지원	<u>40점</u>	<u>40점</u>	
	(1) 하도급대금지급 및 지급시기 등 적정성			
	① 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15점)	(15점)	
	② 하도급대금 현금성결제비율	(8점)	(8점)	
	③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5점)	(5점)	
	④ 전자하도급계약	(2점)	(2점)	
	(2) 협력업자 재무교육 지원			
	① 재무분야	(5점)	(5점)	
	② 교육분야	(5점)	(5점)	
	나. 협력업자와 공동기술 개발 및 기술 지원	<u>10점</u>	<u>5점</u>	
다. 상생협의체 운영	<u>5점</u>	<u>5점</u>		
라. 해외건설 공동도급 등 동반진출 실적	<u>3점</u>	<u>3점</u>		
4. 신인도		<u>12점</u>	<u>22점</u>	
가.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 건설업자간 상호 협력과 관련하여 표창 등을 받은 실적		(2점)	(2점)	
나. 공사대금 적정지급 또는 하도급 관련 제재처분 사항 감점		(10점)	(20점)	배점에서 제재처분 내역에 따라 감점
5. 가 점		<u>+3점</u>	<u>+3점</u>	
<u>가. 민간공사에서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실적</u>		<u>가점(3점)</u>	<u>가점(3점)</u>	<u>신 설</u>
총 계		100점	100점	

8 | 평가결과 우대사항

(1) 우대내용

- PQ등 입·낙찰심사 신인도 평가시 : 0.12점 ~3점 가점
-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시
 - 최근 3년간 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3%~6% 가산

평가결과 점수구간	가 점					가 산
	조달청		지자체			시공능력 평가액
	PQ·적격	종합심사	PQ	적격	종합평가	
95점이상	3.0	0.20	2.0	3.0	0.5	6%
90점이상 95점 미만	2.0	0.18				
80점이상 90점 미만	1.5	0.16	1.5	2.2	0.4	5%
70점이상 80점 미만	1.0	0.14	1.0	1.4	0.3	4%
60점이상 70점 미만	0.5	0.12	0.5	0.5	0.2	3%

※ 60점미만의 경우 우대사항 없음

(2) 우대기간

- PQ 등 입·낙찰심사 신인도 평가
 - 2019년 평가결과('19.6월말 예정) 적용시작일부터 다음년도 평가결과 적용시작 전일까지
-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 2019년 시공능력 평가시('19.7월말 예정)부터 다음년도 평가 전일까지

Ⅱ. 상호협력평가 신청 방법

1 신청업무 흐름도

업 무 명	상 세 내 용
1. 협회 “건설업체 신고안내 시스템” 홈페이지 로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siljuk.cak.or.kr 접속 ○ 법인 범용공인인증서 로그인 ○ 상호협력평가신청 > ‘신청서 작성’ 클릭 ○ 상호협력평가 신청프로그램 사용료 결제
2. 상호협력평가 신청 프로그램 접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sangho.cak.or.kr 접속 ○ 법인 범용공인인증서 로그인
3. 신청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입력 · 확인, 전송 후 출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확인서류 준비 ○ 신청내용 입력 → 내용확정(온라인전송) → 신청서류 출력
4. 서류제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3.15일까지 회원은 소속 시도회, 비 회원은 본회로 제출 (우편제출 시 신청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인정)

2 신청기간

○ 2019. 3. 4.(월) ~ 3. 15.(금)

※ 신청 프로그램의 내용확정(동시 온라인전송) 및 신청서류(전산출력물 · 사실확인서류) 제출이 "모두" 이루어진 경우에만 평가신청 완료로 처리

3 제출서류 목록

구분	서류명	비고	
전산출력물 1)	① 신청서 표지	대표자 인감 확인필	
	② 업종별 협력업자 관리대장		
	③ 공동도급공사별 기성실적 현황	대기업 ²⁾ 에 한함	
	④ 업종별 협력업자와의 하도급계약 및 기성실적 상세현황		
	⑤ 업종별 협력업자별 하도급기성실적 현황		
	⑥ 하도급대금 및 지급시기 등의 적정성 현황		
	⑦ 협력업자 지원현황		
	⑧ 상생협의체 운영현황		
	⑨ 해외건설 공동도급 등 동반진출실적 현황		
	⑩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관련 표창 현황		
	⑪ 제재처분 받은 현황		
	⑫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한 임금지급실적 현황		
	⑬ 협력업체별(사업자별) 하도급기성실적 현황 ³⁾		
사실확인서류 4)	공통	①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원본)	p.29 참조
		② 협력업자의 건설업등록증 (사본)	p.22 참조
		③ 공동수급협정서 갑지 (사본)	p.29 참조
		④ 상생협의체 협정서 등 상생협의체 운영 관련	p.55 참조
		⑤ 상호협력 관련 표창장 (사본)	p.61 참조
		⑥ 기술지원 관련	p.52 참조
		⑦ 대금지급시스템 활용 임금지급 관련	p.67 참조
	업체별 제출	① 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관련	p.39 참조
		② 현금성 결제비율 관련	p.39 참조
		③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관련	p.40 참조
		④ 전자하도급계약 관련	p.40 참조
		⑤ 재무지원 관련	p.48 참조
		⑥ 교육지원 관련	p.48 참조

1)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신청 프로그램(<http://sangho.cak.or.kr>)의
“전체메뉴 > 서류출력 > 전체출력(버튼)”에서 전체 출력 가능

2) 대기업인 종합건설업자란 토목건축공사업의 시공능력공시금액이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등록 및 운용기준’ 1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
(’18년도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이 6,000억원 이상인 업체)

3) 협력업체별(사업자별) 하도급기성실적 현황

○ 협력업체별(사업자별) 하도급기성실적 현황표상의 연번을 ‘매입처별세금
계산서 합계표’상에 기재하여 제출

※ 해당 협력업체(사업자)의 ‘하도급기성실적 현황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상의 금액이 상이할 경우, 3)에 상이한 이유를 간단히 기재할 것 (예: “대표사
발행” 또는 “일부만 발행” 등)

4) 사실확인서류

○ 공통 서류는 모든 평가 신청업체가 3.15일까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며, 일부 누락시 해당항목은 0점 처리됨

○ 업체별 제출 서류는 4월말 개별 업체별로 개별 통보되는 서류로서 협회
에서 지정하는 날까지 제출해야 함

- 평가신청시 등록한 담당자에게 SMS통보 및 ‘건설업체 신고안내 시스템
(siljuk.cak.or.kr)’을 통해 별도 공지

- 서류제출기간이 짧으므로 협회에서 요청시 즉시 제출 가능하도록 미리
서류를 준비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4 유의사항

(1) 제출 후 수정불가

- 상호협력평가 신청서류는 협회에 3.15일까지 제출 후 추가 또는 정정은 “절대” 불가능하므로 신청자는 제출 이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의 내용과 온라인 전송자료가 다를 경우, 협회 제출서류에 의해 평가하므로 충분히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기한 이후 제출 건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출기한까지 제출된 건에 대해서만 평가하므로 기한이후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는 건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해당항목 “0”점 처리) 됩니다.

(3) 허위작성 서류 제출시 제재조치

-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평가 신청한 자는 3년간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허위신청 내용을 토대로 평가된 자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시공능력을 재산정하고 PQ등 입·낙찰시 우대 중지합니다. (조달청 통보 조치 등)

(4) 익년도 평가 대상 성실신고 요망

- 이월되는 공사(계속비공사, 장기계속공사)는 다음년도 상호협력평가지 반영되며, 당년도 제출·평가된 내용에 대해서는 익년도 평가시 변경이 불가하므로 신청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확하게 성실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5) 사실확인서류 원본 제출 및 사전 준비 요망

- 각 사실확인서류는 특별히 사본 제출로 지정되어 있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원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서류 제출처

(1) 회원 : 대한건설협회 각 시·도회로 직접방문 또는 우편 제출

시·도회	주 소	홈페이지
서울시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1, 6층 (건설회관) (우) 06050	http://www.scak.or.kr
부산시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57, 701호 (부산디자인센터) (우) 48059	http://cak.or.kr/city/busan
대구시회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22길 84 (우) 41250	http://cak.or.kr/city/daegu
인천시회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송도센트로드 B동25층) (우) 22007	http://cak.or.kr/city/incheon
광주시회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339, 301호(제일오피스텔) (우) 61478	http://cak.or.kr/city/kwangju
대전시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서로 26, 601호 (우) 35214	http://cak.or.kr/city/daejun
울산시회	울산광역시 중구 백양로 179, 3층(건설회관) (우) 44417	http://cak.or.kr/city/ulsan
경기도회 (북부출장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팔달로 205, 3층(건설회관) (우) 16272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40번길 21(가연타워 1101호) (우) 11651	http://www.kcak.or.kr
강원도회	강원도 춘천시 동면 후만로 166, 2층(건설회관) (우) 24217	http://cak.or.kr/city/kangwon
충북도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58번길 29, 3층 (우) 28516	http://www.cbcaak.or.kr
충남· 세종시회	충남 홍성군 흥복읍 청사로 158(센트럴타워4층) (우) 32256	http://cak.or.kr/city/chungnam
전북도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80 (우) 54984	http://cak.or.kr/city/jeonbuk
전남도회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39(한국시멘트빌딩 4층) (우) 61228	http://cak.or.kr/city/jeonnam
경북도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74안길 11 (우) 42020	http://cak.or.kr/city/kyungbuk
경남도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217번길 26 (우) 51388	http://cak.or.kr/city/kyungnam
제주도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 64, 9층(건설회관) (우) 63125	http://cak.or.kr/city/cheju

(2) 비회원 : 대한건설협회 본회로 직접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7층
대한건설협회 정보관리실 상호협력평가팀 (우) 06050

6 문 의 처

(1) 대한건설협회 각 시·도회 (회원사 문의처)

시·도회	전화번호	시·도회	전화번호
서울시회	(02) 547-7301~3	강원도회	(033) 254-2912
부산시회	(051) 906-9000	충북도회	(043) 253-7496~7
대구시회	(053) 751-6601~3	충남·세종시회	(041) 633-3000
인천시회	(032) 439-7272~3	전북도회	(063) 288-3881~2
광주시회	(062) 232-5601~2	전남도회	(062) 511-4001~5
대전시회	(042) 486-0881~4	경북도회	(053) 755-5007~9
울산시회	(052) 244-6500	경남도회	(055) 288-7001~5
경기도회	(031) 253-4551~5 (031) 878-4550~3	제주도회	(064) 746-2503

(2) 대한건설협회 본회 (비회원사 문의처)

담당	전화번호
상호협력평가 담당자	(02) 3485 - 8242~7

(3) 신청프로그램 사용

담당	전화번호
신청 프로그램 안내 콜센터	(02) 3485 - 8247~9

(4) 전자공인인증서 로그인 (발급, 갱신, 오류 등)

업체명	전화번호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1688-2370

※ 공인인증서 관련 사항은 한국무역정보통신에 직접 문의

☞ 전자공인인증서 발급 수수료 할인 안내

- ▷ 협회는 공인인증서 발급기관인 한국무역정보통신과 업무제휴를 통해 회원사 등 종합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공인인증서 발급 수수료 할인(66,000원) 서비스 제공
- ▷ 협회 인터넷 증명발급 시스템(<http://cert.cak.or.kr>)에서 "공인인증서발급" 배너 클릭
 - ※ G2B 등 공공기관 전자입찰 및 협회 홈페이지(홈페이지, 실적신고 및 상호협력평가, 하도급직불신청, 인터넷 증명발급 등) 이용시 사업자 범용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

Ⅲ. 항목별 평가기준 및 프로그램 입력방법

1 업체개요 및 작성담당자 정보

가. 개요

○ 상호협력 신청사 및 작성담당자의 기본정보*를 입력

* 상호협력관계 평가 중 사실확인서류 요청사항이나 평가결과 통보사항은 기재된 담당자 연락처를 통해 유선 또는 SMS로 통보

나. 전산 입력요령

1. 업체개요 및 작성담당자 정보

The screenshot shows a web interface for entering company and author information. At the top, there are tabs for '전체 메뉴' and '1. 업체개요 및 작성담당자 정보'. Below the tabs, there is a header bar with the text '2. 2018년도 업종별 협력업체 관리대장'. The main content area contains a form with the following sections:

- 업체개요**: A table with fields for '상호' (Company Name), '사업자등록번호'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본사소재지(도로명)' (Head Office Address), '대표자' (Representative), '건설업등록번호' (Construction Industry Registration Number), '기업규모' (Company Size), '법인등록번호' (Corporate Registration Number), '전화번호' (Phone Number), and '건축' (Construction) with sub-fields for '토건' (Civil Engineering), '토목' (Civil Engineering), '건축' (Construction), '산업환경설비' (Industrial Environment Equipment), and '조경' (Landscape).
- 작성담당자**: A table with fields for '소속부서명' (Department Name), '직위 및 성명' (Position and Name), '전화번호' (Phone Number), and '이메일' (Email).
- 개인보호정책**: A section with a checkbox for '약관에 동의 하시겠습니까?' (Do you agree to the terms and conditions?).

CAK 대한건설협회

2018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 평가 신청

- ‘업체개요’ 중 본사 소재지와 전화번호를 입력
 - 만일,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건설업등록번호 등 자사의 업체개요 사항과 다를 경우, 소속 시·도 협회(비회원사 포함)에 문의할 것
- 소속부서명, 직위/성명 등 입력 후 “저장” 클릭
- 개인보호정책을 확인하고 약관에 동의
- ‘업체개요’, ‘작성담당자’ 미입력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지 않음

2 협력업자 관리대장 작성

가. 개 요

- 상호협력평가의 대상이 되는 당년도 협력업자의 정보를 입력

나. 협력업자 인정 기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건설업종 또는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업종만 인정
 -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문화재수리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비건설업자이므로 협력업자로 인정되지 않음
 - 협력업자는 전문건설업자 또는 중소기업 종합건설업자(신청사가 대기업인 종합건설업자*인 경우에 한함)
 - 신청업체가 중소기업인 경우, 종합공사업자는 협력업자로 인정되지 않음
- * (대기업인 종합건설업자) 토목건축공사업의 시공능력공시금액이 조달청의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등록 및 운용기준 1등급에 해당하는 종합건설업자

< 신청사의 규모별 협력업자의 인정범위 >

신 청 사	협력업자 인정	협력업자 불인정
대기업인 종합건설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인 종합건설업자 · 전문건설업자 · 환경공사업종 보유 건설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인 종합건설업자
중소기업인 종합건설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건설업자 · 환경공사업종 보유 건설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인 종합건설업자 · 중소기업인 종합건설업자

* 방지사설업(대기분야, 소음·진동분야, 수질분야), 폐기물처리, 폐수종말처리 등

다. 전산 입력요령

2. 2018년도 업종별 협력업자 관리대장



CAK 대한건설업

2018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 평가 신청

※ 직전년도 협회에 제출하여 인정받은 “전년도 협력업자 명단”이 “자동”으로 내려 받아지므로 ‘전년도 협력업자 여부’를 파악 후 내려 받은 자료를 ’18년도 협력업자 기준으로 삭제, 수정 또는 추가 입력할 것



① 추 가 (버튼)

- “추가” 버튼 클릭하여 협력업자로 인정되는 업체를 등록하되, “상호” 우측 🔍 을 클릭하여 업체명을 검색 후 선택하면 사업자등록번호, 건설업 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는 자동 입력됨

- 만일, 검색되지 않는 협력업자라면, 직접 입력하고 상호협력평가 신청 서류 제출시('19.3.15일까지) 해당 협력업자의 “건설업등록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비건설업자로 간주하여 협력업자 및 하도급실적 등이 인정되지 않음

※ 신청 프로그램상에서 검색되지 않는 업체는 화면 바탕색이 노랑색으로 표시됨

② 협력업자 업종

- “협력업자”는 업체가 아닌 시공할 공사와 관련 있는 “업종” 단위로 등록
※ 1개 법인이 보유한 여러 개의 전문공사업종에 대해 각각 협력업자로 등록 가능

③ 협력업자 등록일자

- 2018년도에 협력업자로 등록(또는 재등록)한 날짜(캘린더에서 날짜선택) 입력
- 우측 상단의 ‘등록일 변경’ (메뉴버튼)에서 등록일자 일괄 조정 가능

④ 전년도 협력업자 여부 (자동 입력됨)

- 동일 법인이라도 “직전년도”에 협력업자로 등록한 업종과 다를 경우 “전년도 협력업자”로 인정되지 않음

※ 전년도 협력업자의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건설업등록번호”는 직전년도 신고 내용에 의해 자동 입력되므로 “전년도 협력업자 여부”는 수정 입력되지 않음

⑤ 입력자료 검색하기

- 업종명,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등 “상단 제목줄을 클릭”하는 경우 해당 항목에 ▲, ▼이 나타나며,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정렬됨

3 | 공동도급 실적 평가

가. 개요

- 대기업인 종합건설업체에 한하여 공동도급계약을 통해 협력업자와 함께 시공에 참여한 실적을 평가 (배점 : 대기업 10점)

나. 평가방법

구분	산정방법	평가기준	점수
가. 협력업자와 공동도급한 기성실적 건수 비율	$\frac{\text{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기성실적 건수}^{2)}}{\text{공동도급 기성실적 건수}^{1)}}$	60%이상	5
		50%~60%미만	4
		40%~50%미만	3
		30%~40%미만	2
		30%미만	0
나. 협력업자의 공동도급 참여율	$\frac{\text{협력업자의 당년도 기성액}^{4)}}{\text{자사의 당년도 기성액}^{3)}}$	30%이상	5
		25%~30%미만	4
		20%~25%미만	3
		10%~20%미만	2
		10%미만	0

▶ ‘가’, ‘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점수 부여

- 단, 당년도 자사의 ‘공동도급 기성실적’이 없는 업체는 기본점수 ‘1점’ 부여

1) ‘공동도급 기성실적 건수’ 판단기준

- 당년도 기성실적이 최소 1백만원 이상인 자사의 공동도급 현장수로서 건설공사 실적신고시 제출·평가받은 결과에 따라 판단 ('19.5월말 확정)
-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차수별 계약을 기준으로 판단

2)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기성실적 건수' 판단기준

- 1)에 따른 '공동도급 기성실적 건수'에 포함된 현장 중 당년도에 공동도급 구성원(1개사 이상)을 협력업자로 등록하고 당년도 신규 공동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발생한 기성실적 건수
 - 다만, ①당년도 신규 공동도급 계약이기는 하나 당년도 협력업자로 등록하기 전에 계약 체결한 경우, ②당년도 이전에 공동도급 계약한 경우에는 해당 협력업자가 직전년도, 당년도 모두 협력업자인 때에 한하여 인정
- 공동도급 구성사가 공동도급 계약체결 당시에는 중소기업인 협력업자에 해당하였으나, 이후 대기업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인정

3) '자사의 당년도 기성액'의 판단기준

- 2)에 따른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기성실적'이 있는 현장에서 발생한 자사의 당년도 기성액을 합산

4) '협력업자의 당년도 기성액'의 판단기준

- 2)에 따른 '협력업자의 공동도급 기성액'을 합산

다. 사실확인서류

- 별도 추가 제출 필요서류 없음

▶ 신청업체 'P건설(주)'의 공동도급실적 (예시)

공 사 명	자사의 당년도 기성액	공동도급 구성사		비 고
		회사명	당년도 기성액	
OO 공사 (계약일자 : '17.8.1.)	70억	A건설(주)	15억	'18.9.1. 협력업자 등록, '17년 협력업자 → 협력업자 공동도급 기성실적 포함
		B건설(주)	10억	'18.9.1. 협력업자 등록, '17년 협력업자 아님 → 협력업자 공동도급 기성실적 제외
		C건설(주)	5억	대기업인 종합건설업자(협력업자 아님) → 협력업자 공동도급 기성실적 제외
△△공사 (계약일자 : '18.10.1.)	40억	D건설(주)	10억	'18.9.1. 협력업자 등록 → 협력업자 공동도급 기성실적 포함
XX 공사 (계약일자 : '18.5.1.)	50억	E건설(주)	50억	협력업자등록일 : '18.9.1일 전년도 협력업자 아님 → 협력업자 공동도급 기성실적 제외

- ⇒ 1)공동도급 기성실적 건수: 3건
- 2)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기성실적 건수: 2건 (OO 공사, △△공사)
- 3)협력업자와 공동도급한 자사의 당년도 기성액 : 110억 (70억+40억)
- 4)협력업자의 당년도 기성액 : 25억 (15억+10억)

▶ 평가기준에 따른 비율산정

가. 협력업자와 공동도급한 기성실적 건수 비율

- 2건²⁾ / 3건¹⁾ = 66.7% ⇒ 5점

나. 협력업자의 공동도급 참여율

- 25억⁴⁾ / 110억³⁾ = 22.7% ⇒ 3점

라. 전산 입력요령 (신청사가 “대기업”인 경우 해당 페이지 자동 실행)

3. 공동도급 공사별 기성실적 현황

CAK 대한건설협회

2018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 평가 신청

- ※ 2018년도 건설공사실적 신고시 협회에 제출한 건설공사 실적신고 내용 중 공동도급건으로 신고한 공사건이 자동으로 내려 받아지며, 추가 또는 수정할 수 있음 (첫1회에 한함)


CAK 대한건설협회

2018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 평가 신청

① 추 가(버튼)

- “추가” 버튼 클릭하여 입력 화면이 나타나면 신고번호, 공사명, 계약년월, 준공년월, 발주자명, 공동도급 전체에 대해 '18년도 당년도 기성액 (전체 및 자사 지분) 입력

② 구성사 추가(버튼)

- 기 입력한 해당 공동도급 공사건에 대해 신청사를 제외한 공동도급 구성사 정보만 추가 입력
 - 구성사가 협력업자인 경우, “상호” 우측  을 클릭하면 ‘2. 2018년도 업종별 협력업자 관리대장’에 입력된 내용을 조회할 수 있으며, 해당업체의 상호를 클릭하여 “상호”, “업종”, “전년도협력업자여부”, “건설업 등록번호“를 자동 입력할 수 있음

③ 예 외

- 공동도급 구성사가 현재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당초 계약체결시 중소기업이었던 경우로서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실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공동수급자에 예외란에 “Y”로 체크
 - 체크하는 경우, 협력업자와 공동도급한 기성총액으로 자동 계산됨

④ 중복 여부

- 하나의 원도급에 대해 각각 다른 건으로 실적 신고한 경우, 별건이 아닌 1건으로 인정되기 위해 “Y”로 체크
 - ※ (예시) A현장의 토목공사와 A현장의 건축공사를 별건으로 신고한 경우 ‘중복’으로 체크하면 1건으로 인정됨

⑤ 자사 기성액

- 해당공사에 대한 자사(신청사) 지분에 해당하는 당년도 기성액을 입력

4 협력업자와의 하도급 실적 평가

가. 개요

- 협력업자에 대한 하도급 실적 비율을 당년도 기성액을 기준으로 평가 (배점 : 대기업 20점, 중소기업 25점)

나. 평가방법

산정 방법	대기업		중소기업	
	평가 기준	점수	평가 기준	점수
협력업자의 하도급기성실적 ²⁾ 총기성실적 ¹⁾	50%이상	20	45%이상	25
	40%~50%미만	15	35%~45%미만	20
	30%~40%미만	10	25%~35%미만	15
	15%~30%미만	5	15%~25%미만	10
	15%미만	0	15%미만	0

1) '총기성실적' 판단기준

- 건설공사 실적신고('19.2월)시 협회에 제출하여 평가받은 자료에 따라 '국내기성액 합계' 금액으로 평가('19.5월말 확정)
- 종합건설업자간 하도급기성실적이 '협력업자의 하도급기성실적'에 포함되는 경우, 동 금액과 '국내기성액 합계'를 합산하여 총기성실적 산정

2) '협력업자의 하도급 기성실적' 판단기준

- 당년도에 협력업자 등록 후 그 협력업자와 신규 하도급 계약 체결 및 기성실적이 발생한 분을 평가
 - 하도급 기성실적에 대한 당년도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으로 산정
 - 당년도에 원도급공사가 준공된 경우, 하도급실적은 익년도 1분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상의 금액까지 인정 가능
 - 공동이행방식인 공동도급의 하도급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분에 자사 지분율을 적용하여 해당 부분만을 인정

- 당년도에 원도급공사건의 기성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 하도급실적은 제외
 - 제외된 하도급 실적은 익년도에 원도급공사 기성실적이 발생하는 경우 익년도 하도급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가능(단, 익년도 하도급실적 신청시 당년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또는 KISCON 건설공사대장을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 한함)
 - ※ 원도급 기성실적 없는 하자보수 하도급계약건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협력업자가 직전년도 및 당년도에 모두 협력업자인 때에 한하여 ‘협력업자의 하도급 기성실적’으로 인정
 - 당년도 신규계약 체결분인 경우로서 당년도 협력업자로 등록하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
 - 당년도 이전에 하도급계약 체결분인 경우로서 당년도에 하도급 기성실적이 발생한 경우
- 자기건설공사에 대한 협력업자의 기성실적도 하도급 기성실적으로 인정
- 대기업인 종합건설업자와 중소기업인 종합건설업자간 하도급실적도 인정

다. 사실확인서류

- ㉠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자사의 “2018년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받은 원본을 제출할 것
 - 거래기간을 2018.1.1~12.31으로, 반드시 **연간기준으로** 작성된 서류일 것
 - 자체기장 등으로 인해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확인자 날인 없이 우선 제출('19.3.15한)하고,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출력, 등기우편으로 4.26.까지(도착일 기준) 제출할 것
 - ※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합계표 및 통계조회 →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 →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매입) 해당원장 모두 (총4분기) 출력
 - 분류: 전자세금계산서 / 전자계산서, 작성일자: 분기별 전체 출력
- ㉡ (공동도급의 하도급계약이 있는 경우) 해당공사의 **공동수급협정서 사본**
 - 공동도급 대표사, 구성원사 모두 제출
- ㉢ (공동도급 “구성원사”로서의 하도급계약인 경우) 다음 중 **택일 제출**
 - 공동도급 대표사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 (해당부분에 밀줄표시)
 - 협력업체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
 - 개별 공사건별 키스콘 건설공사(하도급)공사대장 출력물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

라. 전산 입력요령

4. 업종별 협력업자와의 하도급계약 및 기성실적 상세현황

전체메뉴 < 3 공종도급 공사별 기성실적 현황 4. 업종별 협력업자와의 하도급계약 및 기성실적 상세현황 5 업종별 협력업자별 하도급 기성실적 현황 >

하도급 기성액이 0인 데이터 역종업로도 역설다문로도

조회 추가 하도급추가 ① 수정 삭제 출력

신규 하도급계약건수 : 4건 | 당년도하도급기성실적건수(신규하도급계약) : 4건 전체 하도급건수 : 4건 | 당년도기성실적 합계 : 350백만원

20 업종: 공사업: 전체선택

순번	원도급공사						업종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하도급공사(백만원)			
	신고번호	공사명	계약년월	준공년월	공공공사	기성액				계약일자	준공일자	총계약액	기성액
<input type="checkbox"/>	1 2018-0001	테스트1	2018-01	2018-09	Y	10,000	가스시공(주)동양에너지	206-81-52288	2018-03-01	2018-09-01	200	100	
<input type="checkbox"/>	2 2018-0003	테스트2	2018-05	2020-09	N	1,451	기계설비 (주)공성	124-81-36797	2018-06-01	2019-11-01	300	100	
<input type="checkbox"/>	3 2018-0004	테스트3	2017-05	2020-05	N	1,999	송강기 (주)대오정공	128-81-19387	2018-11-01	2018-12-31	100	50	
<input type="checkbox"/>	4 2018-0005	테스트4	2017-02	2018-03	N	3,000	조경시설 (주)동영조경	105-81-72190	2018-01-01	2018-02-28	300	100	

전체 4건 (1 ~ 4) 1

CAK 대한건설협회

2018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 평가 신청

- ※ 2018년도 건설공사실적 신고시 협회에 제출한 건설공사 실적신고 내용이 자동으로 내려 받아지므로 “수정”버튼을 클릭하여 협력업자의 실적을 입력할 것 (첫1회에 한함)

전체메뉴 < 3 공종도급 공사별 기성실적 현황 4. 업종별 협력업자와의 하도급계약 및 기성실적 상세현황 5 업종별 협력업자별 하도급 기성실적 현황 >

하도급 기성액이 0인 데이터 역종업로도 역설다문로도

조회 추가 하도급추가 ① 수정 삭제 출력

신규 하도급계약 4건 | 당년도기성실적 합계 : 350백만원

업종:공

순번

1 2018-0001

2 2018-0003

3 2018-0004

4 2018-0005

전체 4건 (1 ~ 4)

입종별 협력업자와의 하도급계약 및 기성실적 자료편집

② 원도급공사

신고번호: 2018-0003

공사명: 영종하늘도시 소위천공사

계약년월: 2018-05

준공년월: 2020-09

당년도기성액 (자사분): 1,451 백만원

공종도급 자사지분율: 공동이행 30%

공공공사여부:

발주자명: 자기공사여부

비고:

※ 신고번호는 년도-순번(4자리)로 입력하세요
※ 자기공사의 경우 발주자명에 "자기공사" 필수입력

③ 하도급공사

업종: 강구조물

상호: (주)대룡산업

사업자등록번호: 608-81-44290

계약일자: 2018-03-01

준공일자: 2018-12-31

총계약액: 100 백만원

당년도기성액: 52 백만원

※ 당년도 원도급 실적이 0 이거나 실적평가시 불인정 받은 경우 하도급 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④ 하도급추가

하도급공사(백만원)			
계약일자	준공일자	총계약액	기성액
2018-03-01	2018-09-01	200	100
2018-06-01	2019-11-01	300	100
2018-11-01	2018-12-31	100	50
2018-01-01	2018-02-28	300	100

CAK 대한건설협회

2018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 평가 신청

① 수정 (버튼)

- “수정”버튼 클릭하여 입력 화면이 나타나면 원도급공사와 하도급공사 내역 모두 입력할 것

② 원도급공사

- 당년도 기성실적에 대해 2018년도 협회 실적 신고한 내용이 표시되며, 일부 항목에 대해 수정 가능
- 협회 신고번호, 공사명, 계약년월, 준공년월, 당년도기성액(자사분), 공동도급여부 및 자사지분율(공동이행방식 공동도급이 아닌 경우 100%), 공공공사 여부, 발주자명(자기공사 여부) 입력

③ 하도급공사

- 하도급공사의 업종선택, “상호” 검색(상호 우측 🔍를 클릭하여 “2. 2018년도 업종별 협력업자관리대장”에 입력되어 있는 업체를 선택)하여 입력하거나 직접 입력
- 업종,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전년도협력업자여부 항목이 자동 입력되며, 계약일자, 준공일자, 총계약금액, 당년도기성액 등 입력 후 저장
- 원도급공사가 차수계약이며 2018년도에 2건 이상의 차수계약이 발생하고 하도급은 총괄 계약한 경우 하도급기성액은 한쪽 차수로 몰아서 입력 가능

④ 하도급추가(버튼)

- 기 입력된 해당 원도급공사에 하도급계약 내용만 추가 입력시 사용
- 해당 원도급 공사를 선택 후 하도급추가(버튼) 클릭, 협력업자 및 하도급공사내역 입력 후 저장

5. 업종별 협력업자별 하도급 기성실적 현황

진행단계 < 4. 업종별 협력업자간의 하도급계약 및 기성실적 상세현황 **5. 업종별 협력업자별 하도급 기성실적 현황** 6. 하도급대금 및 지급시기 등의 작성성 현황 >

업종별 협력업자별 하도급 기성실적 현황을 확인합니다.

① 조회 | 출력 | 사업자번호별 출력

하도급 건수 : 4건 | 하도급기성실적 합계 : 350백만원

20 업종: 공사명:

순번 ▲	업종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건설업등록번호	전년도 협력업자	하도급실적	
						하도급건수	하도급기성액(백만원)
1	가스시공	(주)동양에너지	206-81-52288	성북01-27-1-4	Y	1	100
2	기계설비	(주)경성	124-81-36797	오산2006-12-1	Y	1	100
3	승강기	(주)대오정공	128-81-19387	파주98-26-1	Y	1	50
4	조경시설	(주)동영조경	105-81-72190	92-서울-19-18	Y	1	100

전체 4 건 (1 ~ 4) 1

CAK 대한건설평가

2018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 평가 신청

※ “2. 2018년도 업종별 협력업자 관리대장” 및 “업종별 협력업자와의 하도급계약 및 기성실적 상세현황”에 입력한 내용이 자동 입력됨

① 사업자등록번호별 출력 (버튼)

○ “업종별 협력업자와의 하도급계약 및 기성실적 상세현황”에서 입력한 자료를 협력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별로 하도급실적을 자동 집계하여 협력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순서대로 하도급실적이 조회, 출력됨

○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와 상호·대조 확인용으로 활용

※ “사업자등록번호별 출력물” 상의 순번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공동수급협정서”상에 반드시 기재하여 제출할 것

※ “사업자등록번호별 출력물”상의 금액과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상의 금액이 다를 경우, 집계표상에 다른 이유를 기재(예 : “대표사 발행” 또는 “일부만 발행” 등)

1. 원도급 미기성분에 대한 ‘협력업자의 하도급기성실적’ 인정 여부

- 선급금 등 하도급대금지급으로 인해 당년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하더라도 원도급의 총기성실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협력업자의 하도급기성실적’에서 제외함
- 하도급실적은 $\frac{\text{협력업자의 하도급기성실적}}{\text{총기성실적}}$ 비율에 의해 평가하므로 총기성실적(분모)에 포함되지 않는 하도급실적(분자)은 제외

2. 종합건설업자간 하도급한 경우, ‘협력업자의 하도급기성실적’ 인정 여부

- ‘대기업인 종합건설업자’가 ‘중소기업인 종합건설업자’를 협력업자로 등록하고 하도급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 가능
 - 단, 종합건설업자간 하도급실적은 자사 총기성실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frac{\text{협력업자의 하도급기성실적}}{\text{총기성실적}}$ 산식의 분모, 분자에 동시 합산 필요
- 대기업인 종합건설업자간, 중소기업인 종합건설업자간은 상호협력 평가시 협력업자로 인정 불가

5 하도급대금 및 지급시기 등 적정성 평가

가. 개요

- 공정한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운영성과 반영을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하도급대금 현금성 결제비율,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전자하도급 계약 실적을 각 항목별로 평가 (배점 : 30점)

나. 평가방법

(1) 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구분	산정방법	평가기준	점수
가. 하도급률 적정 하도급건수 비율	$\frac{\text{대금 적정 지급 하도급건수}^2)}{\text{신규 하도급건수}^1)}$	70%이상	15
		60%~70%미만	13
		50%~60%미만	11
		40%~50%미만	8
		30%~40%미만	5
		10%~30%미만	3
		10%미만	0
나. 하도급률 적정 하도급건수	하도급률 적정 하도급건수 합산	120건이상	15
		80건~120건미만	13
		50건~80건미만	11
		40건~50건미만	8
		30건~40건미만	5
		30건미만	0

▶ ‘가’, ‘나’ 중 점수가 높은 쪽으로 선택 적용

1) ‘신규 하도급 건수’의 판단기준

- 당년도 협력업자와의 신규 하도급계약 건수를 합산하여 산정
- 자기공사에 대한 협력업체와의 계약건은 제외

2) ‘하도급대금 적정 지급 하도급 건수’ 판단기준

- 1)에 따른 ‘신규 하도급 건수 중 발주자 및 하도급업자가 ‘하도급률’이 적정하다고 확인한 하도급건수
 - 단,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하도급업자의 확인 없이 해당 건을 ‘하도급대금 적정 지급 하도급건수’로 인정
 - ※ 공공발주자는 하도급률이 일정 수준 이하인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하도급계약 적정 여부를 심사(건설법 제31조제2항)
- 공동이행방식인 공동도급의 경우 발주자 및 하도급업자가 ‘하도급률’이 적정하다고 확인하였다면 대표사 및 구성사 모두 동일하게 적용

☞ **하도급률이란**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79호('16.10.12) >

- ▷ “하도급계약금액”을 “하도급부분금액”으로 나눈 비율
- ▷ “하도급부분금액”은 하도급하고자 하는 공사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 ▷ “하도급계약금액”은 수급인이 하수급자와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

[2] 하도급대금 현금성 결제 비율

구 분	산정방법	평가기준	점수
가. 현금성 결제비율이 우수한 하도급 건수 비율	현금성결제비율이 우수한 하도급건수 ²⁾ 신규 하도급건수 ¹⁾	30%이상	8
		20%~30%미만	6
		10%~20%미만	4
		5%~10%미만	3
		5%미만	0
나. 현금성 결제비율이 우수한 하도급 건수	현금성결제비율이 우수한 하도급 건수 합산	50건이상	8
		40건~50건미만	6
		30건~40건미만	4
		20건~30건미만	3
		20건미만	0

☑ ‘가’, ‘나’ 중 점수가 높은 쪽으로 선택 적용

1) '신규 하도급건수'의 판단기준

- '협력업자의 하도급 기성실적'으로 인정된 당년도 신규 하도급계약건 중 당년도 하도급기성실적이 있는 건수를 합산하여 산정
- 자기공사에 대한 협력업체와의 계약건은 제외

2) '현금성 결제비율이 우수한 하도급건수'의 판단기준

- 1)에 따른 '신규 하도급건수' 중 관련 하도급대금 전부를 법정기일 전 협력업자에게 지급한 하도급계약 건으로서, 하도급대금의 현금성결제 비율*이 발주자로부터 수령한 원도급대금의 현금성결제비율**을 초과한 하도급계약의 건수

- 단, ① 하도급대금을 100%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지급한 경우, ② 하도급대금 모두를 발주자가 협력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도 '현금성 결제비율이 우수한 하도급건수'에 포함

- 종합건설업체인 신청사가 하수급인인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협력업자에게 재하도급한 경우, "발주자"는 "원수급인"으로, "원도급대금"은 "하도급대금"으로, "하도급대금"은 "재하도급대금"으로 간주

$$* \text{ 하도급대금의 현금성결제비율} = \frac{\text{당년도에 현금성결제수단으로 지급한 하도급대금}}{\text{당년도 발행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

$$** \text{ 원도급대금의 현금성결제비율} = \frac{\text{당년도에 현금성결제수단으로 수령한 원도급대금}}{\text{당년도 발행 (매출)세금계산서상 금액}}$$

- 공동이행방식인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가 하도급대금을 현금성결제수단으로 지급하였다면 구성사도 동일하게 적용

☞ 현금성결제 인정범위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 현금, 수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구매론

(3)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구 분	산정방법	평가기준	점수
가.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한 하도급 건수 비율	$\frac{\text{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하도급건수}^2)}{\text{신규 하도급건수}^1)}$	30%이상	5
		20%이상~30%미만	4
		10%이상~20%미만	3
		5%이상~10%미만	2
		5%미만	0
나.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하도급 건수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하도급 건수 합산	50건이상	5
		40건이상~50건미만	4
		30건이상~40건미만	3
		20건이상~30건미만	2
		20건미만	0

▶ ‘가’, ‘나’ 중 점수가 높은 쪽으로 선택 적용

1) ‘신규 하도급건수’의 판단기준

- ‘협력업자의 하도급 기성실적’으로 인정된 당년도 신규 하도급계약건 중 당년도 하도급기성실적이 있는 건수를 합산하여 산정
- 자기공사에 대한 협력업체와의 계약건은 제외

2)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한 하도급 건수’ 판단기준

- 1)에 따른 ‘신규 하도급건수’ 중 관련 하도급대금 모두를 법정기일 전*에 발주자로부터 수령한 원도급대금의 현금성 결제비율 이상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하도급계약 건수
 - 종합건설업체인 신청사가 하수급인인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협력업자에게 재하도급한 경우, “발주자”는 “원수급인”으로, “원도급대금”은 “하도급대금”으로, “하도급대금”은 “재하도급대금”으로 간주

* 발주자로부터 원도급대금 수령시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발주자로부터 원도급대금 미수령시 하도급 기성·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59일 이내**를 의미

☞ 하도급대금 지급의 법정기일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 ▷ 발주자로부터 원도급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원도급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고 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60일**

- 하도급대금 모두를 발주자가 협력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도 포함
 - 단,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 후 발주자·협력업자와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합의한 경우 기 수령한 선급금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인정
- 공동이행방식인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가 하도급대금을 조기 지급하였다면 구성사도 동일하게 적용

[4] 전자하도급계약

산정방법	평가기준	점수
$\frac{\text{전자하도급계약건수}^2)}{\text{신규 하도급건수}^1)}$	50%이상	2
	20%~50%미만	1
	20%미만	0

1) '신규 하도급건수'의 판단기준

- 당년도 협력업자의 신규 하도급계약의 건수를 합산하여 산정

2) '전자하도급계약건수'의 판단기준

- 1)에 따른 '신규 하도급건수' 중 다음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건수

☞ 전자계약시스템

- ▷ 오프라인 방식으로 처리하던 계약서의 작성, 체결, 관리 등 일련의 계약업무를 공인인증서 기반의 양방향 전자서명 및 암호화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방식
- ▷ 계약당사자간 직접 방문 없이 양지간 전자서명에 의해 전자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사후에도 해당 계약내용을 조회 및 출력 가능

- 공동이행방식인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가 체결한 전자하도급계약 건에 대하여 구성사도 동일하게 적용

다. 사실확인서류

(1) 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A. 공공공사의 경우

- 보증기관이 발행한 하도급 계약이행보증서, 대금지급 보증 등 계약사실 확인서류(Kiscon 건설공사대장에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 가능)

B. 민간공사의 경우

- ㉠ 보증기관이 발행한 하도급 계약이행보증서, 대금지급 보증 등 계약사실 확인서류 (Kiscon 건설공사대장에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 가능)
 - ㉡ 하도급률 확인서 (붙임 양식 참조)
- ⇒ ㉠, ㉡을 1set로 제출

(2) 하도급대금 현금성 결제 비율

- ㉢ 공사대금수령 및 하도급대금지급 내역서(붙임 참조)
 - ㉣ 입금증, 통장사본, 금융기관이 확인한 거래내역표 등 원도급대금 수령 내역 확인서류 (현금성 결제수단으로의 수령 여부 확인이 가능한 금융기관 확인서류)
 - ㉤ 입금증, 통장사본, 금융기관이 확인한 거래내역표 등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 확인서류 (현금성 결제수단으로의 수령 여부 확인이 가능한 금융기관 확인서류)
 - ㉥ 세금계산서 사본(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 원본)
- ⇒ ㉢, ㉣, ㉤, ㉥을 1set로 제출
- 단, 하도급대금직불을 동의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직불동의서” 및 “(매입) 세금계산서” 사본으로 ㉢~㉥ 대체 가능

(3)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실적

- ㉠ 공사대금수령 및 하도급대금지급 내역서(붙임 참조)
- ㉡ 입금증, 통장사본, 금융기관이 확인한 거래내역표 등 원도급대금 수령 내역 확인서류 (수령일자 및 수령액 확인이 가능한 금융기관 확인서류)
- ㉢ 입금증, 통장사본, 금융기관이 확인한 거래내역표 등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 확인서류 (지급일자 및 지급액 확인이 가능한 금융기관 확인서류)
- ㉣ 세금계산서 사본(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 원본)

⇒ ㉠,㉡,㉢,㉣을 1set로 제출

단, 하도급대금직불을 동의한 경우에는“하도급대금직불동의서 ” 및 “(매입)세금계산서 ”사본으로 ㉠~㉣ 대체 가능

(4) 전자하도급계약 실적

- 전자하도급계약서 또는 전자하도급계약서를 작성·등록한 전자계약시스템 화면 캡처 출력물

※ 나이스다큐 전자조달시스템(www.nicedacu.com)을 통한 하도급계약은 사실확인 서류 제출 불필요

라. 전산 입력요령

6. 하도급대금 및 지급시기 등의 적정성 현황

전체 메뉴 < 5. 업종별 협력업자별 하도급 기성실적 현황 6. 하도급대금 및 지급시기 등의 적정성 현황 7. 협력업자 지원현황 >

하도급 대금지급의 적정여부가 미입력된 자료임. 자기공사의 경우 대금지급, 현금성결제, 조기지급 모두 표시

조회 수정 삭제 출력 공공공사실정하기

하도급대금 적정성 : 3건 | 현금성 결제비율 : 3건 |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 2건 | 전자하도급계약 : 3건 전체 건수 : 5건

20 업종: 공사업: 전체선택

순번	원도급공사				하도급공사				하도급 대금지급의 지급시기등의 적정여부			
	신고번호	공사업	계약년월	공공공사	업종	상호	계약일자	당년도기성액	대금적정	현금성결제	조기지급	전자계약
<input type="checkbox"/> 1	2018-0001	테스트1	2018-01	Y	가스시공	(주)동양에너지	2018-03-01	100	Y	Y	Y	Y
<input type="checkbox"/> 2	2018-0001	테스트1	2018-01	Y	가스시공	광동개발(주)	2018-01-12	150	N	N	N	N
<input type="checkbox"/> 3	2018-0003	테스트2	2018-05	N	기계설비	(주)경성	2018-06-01	100	Y	Y	Y	Y
<input type="checkbox"/> 4	2018-0004	테스트3	2017-05	N	승강기	(주)대오정공	2018-11-01	50	Y	N	N	N
<input type="checkbox"/> 5	2018-0005	테스트4	2017-02	N	조경시설	(주)동영조경	2018-01-01	100	N	Y	N	Y

전체 5 건 (1 ~ 5)

CAK 대한건설평가

2018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 평가 신청

- ※ “2. 2018년도 업종별 협력업자 관리대장” 및 “4. 업종별 협력업자와의 하도급 계약 및 기성실적 상세현황”에 입력한 내용 중 2018년도 신규 하도급계약 목록이 자동으로 표시됨

전체 메뉴 < 5. 업종별 협력업자별 하도급 기성실적 현황 6. 하도급대금 및 지급시기 등의 적정성 현황 7. 협력업자 지원현황 >

하도급 대금지급의 적정여부가 미입력된 자료임. 자기공사의 경우 대금지급, 현금성결제, 조기지급 모두 표시

조회 수정 삭제 출력 공공공사실정하기

하도급대금 및 지급시기 등의 적정성 현황 편집

신고번호: 2018-0003 공사업: 업종하늘도시 스위천 계약년월: 2018-05 공공공사: 자기공사:

업종: 강구조물 상호: (주)대물산업 사업자등록번호: 608-81-44290 계약일자: 2018-03-01

준공일자: 2018-12-31 총계약액: 100 당년도기성액: 52

하도급대금 및 지급시기등의 적정성

하도급대금 적정성 여부 하도급률: 0 (%) 비교: 전자하도급 계약여부 전자계약시스템명:

현금성 결제비율 우수 여부 하도급대금 결제수단: --선택--

하도급대금 현금성지급유형: 전금금 제외 하도급대금 직불

현금성결제비율(A/B): 999 %

- 하도급(A) = 현금지급액 / 하도급기성액 = / 52 = %

- 현금성(B) = 현금수령액 / 현금성기성액 = / 1451 = %

원도급대금 수령여부: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액: (단위: 백만원)

조기지급 여부 최초수령일: 최종수령일: 수령횟수: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일: 최종지급일: 지급횟수:

<< >> 저장 닫기

① 수정 (버튼)

- 공사목록에서 1건 공사를 선택 후 “수정” 버튼 클릭하여 입력화면이 나타나면 내용 입력

② 하도급대금 적정 여부

- 다음의 경우, 하도급대금 적정 여부에 체크
 - 공공공사(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신규 하도급계약인 경우
 - 민간공사의 신규 하도급계약인 경우로서 발주자 및 하도급업자 모두가 해당 하도급건의 ‘하도급률’이 적정하다고 확인한 경우

③ 하도급률

- 민간공사에 한해 입력

④ 전자하도급계약 여부

- 전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체크하고, 전자계약시스템명 입력

⑤ 현금성결제비율 우수 여부

- 신규 하도급계약건 중 2018년에 하도급대금 모두를 **법정기일을 초과하지 않고** 협력업자에게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 체크
 - i) 하도급대금 현금성결제비율이 원도급대금 현금성결제비율을 초과한 경우
 - ii) 하도급대금을 100% 현금성결제수단으로 지급한 경우
 - iii) 하도급대금직불에 동의한 경우
 - ※ 원도급사의 선급금 수령 후 하도급대금 직불한 건의 경우, 선급금을 법정기일 이내에 지급한 경우에 한해 인정(선급금 포기 각서, 보증서 미제출 등 선급금 지급이 안 된 경우에는 불인정)
- 자기공사에 대한 협력업자와의 계약건, 협력업자의 당년도 하도급기성액이 ‘0’인 경우는 제외

⑥ 하도급대금 결제수단

- 현금, 수표, 기업구매카드, 구매론, 외담대, 현금성과 어음 혼용 중 택일

⑦ 하도급대금 현금성지급 유형

- 다음 중 택일
 - i) 선급금포함 하도급대금직불
 - ii) 선급금제외 하도급대금직불
 - ※ 원·하도급의 선급금 수령 및 지급내역 입력 필수
 - iii) 하도급대금 100% 현금성결제수단 지급
 - iv) 어음, 현금을 혼용하여 지급한 경우

⑧ 조기지급 여부

- 신규 하도급계약건 중 2018년도에 하도급대금 모두를 법정기일 도래 전에 발주자로부터 수령한 현금성결제비율 이상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경우 체크
- 자기공사에 대한 협력업자와의 계약건, 협력업자의 당년도 하도급기성액이 '0'인 경우는 제외

6 협력업자 재무·교육 지원 평가

가. 개요

- 협력업자에 대한 재정 및 교육 실시 지원 실적을 평가 (배점 : 10점)

나. 평가방법

(1) 협력업자 재무지원

구분	산정방법	평가기준	점수
가. 재정지원한 협력업자 업체수 비율	$\frac{\text{재정지원한 협력업자 업체수}^2)}{\text{총협력업자업체수}^1)}$	60%이상	5
		40%이상~60%미만	4
		20%이상~40%미만	3
		10%이상~20%미만	2
		10%미만	0
나. 재정지원한 협력업자 업체수	재정지원한 협력업자 업체수 합산	100개 이상	5
		70개 이상~100개 미만	4
		40개 이상~70개 미만	3
		20개 이상~40개 미만	2
		20개사 미만	0

▶ ‘가’, ‘나’ 중 점수가 높은 쪽으로 선택 적용

1) ‘총협력업자 업체수’의 판단기준

- 자사에 등록된 협력업자의 총 업체수
 - 1개 업체가 다수의 공사업종별로 협력업자를 등록한 경우라도 업체수는 1개로 판단
 - ※ (예시) 토공사업자 ‘A건설(주)’과 포장공사업자 ‘A건설(주)’를 각각 협력업자로 등록한 경우 총협력업자 업체수는 1개에 해당

2) '재정지원한 협력업자 업체수'의 판단기준

- 다음의 인정 유형에 따라 1개 협력업자 업체별 최소 '1백만원 이상', '1회 이상' 재정 지원한 협력업자 업체수를 합산
 - 하나의 협력업자와 다수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해당 업체에 지원된 금액이 '1백만원 이상'이면 재정지원 업체수에 포함
 - ※ (예시) 토공사업종과 포장공사업종에 대해 각각 협력업자로 등록한 'A건설(주)'과 각 업종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토공사 계약에 대해서만 원도급대금 수령 없이 하도급대금 1백만원을 우선 지급한 경우 'A건설(주)'는 '재정지원한 협력업자 업체수'에 포함
 - 당년도 해당 협력업자와의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무 지원시 인정 가능

☞ 재무지원 인정 유형 (변경)

- ① 협력업자에게 업체당 하도급대금외 1백만원 이상의 현금 또는 현물 (기자재 등)을 지급한 경우
- ② 발주자로부터 선금금, 기성금, 준공금 등 공사대금을 전혀 수령하지 않고 1백만원 이상 하도급대금을 현금성결제수단으로 선지급한 경우
- ③ 전자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된 협력업체의 인지세 지원금액이 1백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인지세액 중 50%이상을 자사가 부담한 경우
 - 하도급계약액 1천만원 이상 : 지원금액 6만원
 - 하도급계약액 3천만원 이상 : 지원금액 12만원
 - 하도급계약액 5천만원 이상 : 지원금액 20만원
 - 하도급계약액 1억원 이상 : 지원금액 50만원
 - 하도급계약액 2억원 이상 : 지원금액 120만원
 - ※ 공동이행방식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수급체가 계약한 총하도급계약액 기준으로 하며, 대표사 및 구성사 모두 재무지원 협력업체수 인정
- ④ 하도급대금을 지급보증하고 하도급계약이행보증서 발행을 면제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된 협력업체별 수수료 등 지원금액이 1백만원 이상인 경우
 - 하도급계약액 4천만원 이상 : 지원금액 12만원
 - 하도급계약액 5천만원 이상 : 지원금액 20만원
 - 하도급계약액 1억원 이상 : 지원금액 50만원
 - 하도급계약액 2억원 이상 : 지원금액 120만원
 - ※ 공동이행방식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수급체가 계약한 총하도급계약액 기준으로 하며, 대표사 및 구성사 모두 재무지원 협력업체수 인정

[2] 협력업자 교육지원

구 분	산정방법	평가기준	점수			
가. 교육에 참가한 협력업자 업체수 비율	교육을 지원한 협력업자 업체수 ²⁾ 총협력업자 업체수 ¹⁾	60%이상	5			
		40%이상~60%미만	4			
		20%이상~40%미만	3			
		10%이상~20%미만	2			
		10%미만	0			
나. 교육에 참가한 협력업자 임직원수	지원 교육에 참가한 협력업자의 임직원수 합산	협력업체 1,000개사 이상	협력업체 500개사 이상	협력업체 500개사 미만	/	
		200인 이상	159인 이상	120인 이상		5
		160~199인	120~159인	70~119인		4
		120~159인	80~119인	40~69인		3
		80~119인	40~79인	20~39인		2
		80인 미만	40인 미만	20인 미만		0

▶ ‘가’, ‘나’ 중 점수가 높은 쪽으로 선택 적용

1) ‘총협력업자 업체수’의 판단기준

- 자사에 등록된 건설업종별 협력업자의 총 업체수
 - 다수의 공사업종을 등록한 하나의 협력업자에 대하여 공사업종별로 협력업자를 등록한 경우라도 업체수는 1개로 판단

2) ‘교육을 지원한 협력업자 업체수’의 판단기준

- 다음의 ‘협력업자 교육지원 인정기준’에 따른 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지원한 협력업자의 업체수를 합산
 - 하나의 협력업자와 전문공사 업종별로 다수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회에 걸쳐 교육을 지원하였더라도 업체수는 1개로 인정
 - ※ (예시) 토공사업자 ‘A건설(주)’과 포장공사업자 ‘A건설(주)’를 각각 협력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2회에 걸쳐 교육을 지원하였더라도 교육지원 업체수는 1개에 해당
 - 당년도 해당 협력업자와의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 지원시 인정 가능
- 공동이행방식인 공동도급에 있어 공동수급체 차원에서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에 한해 구성사가 해당 협력업자를 교육지원한 것으로 인정 가능

☞ **협력업자 교육 인정기준**

① ‘중앙행정기관이 승인한 교육기관 및 교육훈련과정’

- 고용노동부의 HRD-Net(직업능력개발종합정보망) 등록 교육훈련과정*, 교육부 인정 평생교육기관 교육과정
- * <http://www.hrd.go.kr> 훈련정보(기업과정) 중 “건설”직종에서 검색 가능
- 기술자 승급교육, 기사자격증 취득교육, 정기 안전교육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교육은 제외
- 교육과정은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각각 1시간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수료증에 교육과정이 명기되어야 함
- 온라인교육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교육비 환급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만 인정

② ‘교육실비 등 지원’

- 원도급업체가 ‘교육실비’를 지원하는 경우, 해당 교육훈련기관에 직접 지급하든, 협력업체를 통해 지급하든 모두 인정 가능
- 단, 협력업체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참가한 교육과정 시작일 기준 전후 3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상반기(1~8월) 교육 참여시 법인 및 인원수에 1.2배 가중치 부여 (소수점이하 절사)

※(예시) 법인수는 협력업체100개사 기준, 인원수는 협력업체1,000개사 이상 기준

구 분		상반기수료(×1.2)	하반기수료(×1)	인정 법인수, 임직원수
가. 법인수	case1	50 (60)	0	60%
	case2	0	60	60%
	case3	40 (48)	12	60%
나. 인원수	case1	120 (144)	56	200인
	case2	150 (180)	20	200인

다. 사실확인서류

(1) 협력업자 재무지원 : 유형별 해당 제출자료 모두 제출

재무지원 유형	제출서류
업체당 하도급대금 외 1백만원 이상의 현금 또는 현물(기자재 등) 지급	㉠ 원·하도급 업체의 법인 통장사본, 입금증 등 금융기관 서류 ㉡ 사유서(별도 양식은 없으며, 내용·날짜·금액이 명시되고 원·하도급사 날인한 원본 제출)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기성금을 수령하지 않고 1백만원 이상 하도급대금을 현금성결제수단으로 선지급	㉠ 원·하도급 업체의 통장사본, 입금증 등 금융기관 서류 ㉡ KISCON 건설공사대장 (원도급금액이 1억 미만인 경우 원·하도급계약서)
협력업체와의 하도급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체결	㉠ 전자하도급계약서 또는 전자하도급계약서를 작성·등록한 전자계약시스템 화면 캡처 출력물 ㉡ 전자수입인지 납부확인증 또는 (홈텍스를 통해 인지세 납부한) 국세전자납부확인서 ㉢ 자사의 인지세(50% 이상) 납부 확인서류
협력업체와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 보증하고 하도급계약이행보증서 발행을 면제	㉠ 원도급 및 하도급 계약서 사본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 하도급사의 하도급이행보증서 발행 내역 ㉣ 보증서 면제 사유서

(2) 협력업자 교육지원

<p>㉠ 교육참가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중 택1 (재직여부확인)</p> <p>㉡ 교육기관등록증 사본 또는 교육기관 확인서(적정 교육기관 여부 확인)</p> <p>- 온라인 교육인 경우 교육훈련과정 인정서(HRD-Net상 화면캡처 출력물)</p> <p>㉢ 교육기관이 발행한 교육수료증(교육비 지급내역, 교육과정 및 교육참석 사실 확인)</p> <p>㉣ 자사가 협력업체에게 직접 교육비를 지원하는 등 교육수료증을 통해 교육지원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 확인서류 (교육비 이체 통장사본 등)</p> <p>- 공동도급의 경우로서 ㉢ 또는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공동수급체가 교육지원 하였음을 입증하는 대표사 확인 서류 제출</p> <p>⇒ ㉠, ㉡, ㉢, ㉣을 1set로 제출</p> <p>단,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을 수료한 경우 ㉠, ㉡, ㉢을 갈음하여 '훈련수료자 보고서' 제출 가능</p>
--

라. 전산 입력요령

7. 협력업자 지원현황

(1) 협력업자 재무지원

① 추 가 (버튼)

- 협력업자 재무지원 실적이 있는 경우, “추가” 버튼 클릭하여 입력 화면이 나타나면 지원내용 입력

② 지원분야

- ‘재무분야’ 선택 후 다음의 ‘재무분야(세부)’ 중 택일
 - 하도급대금 외 1백만원이상 현금 또는 (기자재 등) 현물지원
 - 원도급대금수령전 1백만원이상 하도급대금 현금지급
 - 전자하도급계약시 인지세 50%이상 지원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행 후 계약행보증서 발행면제

③ 상 호

- “상호” 우측 🔍 를 클릭하여 ‘2. 2018년도 업종별 협력업자 관리대장’에 기 입력된 업체 중 택일

④ 엑셀다운로드 및 엑셀업로드

- 교육지원한 협력업체가 많을 경우 우측상단에 엑셀양식을 다운받아 입력 후 업로드기능 활용

[2] 협력업자 교육지원

협력업자 지원현황을 입력합니다.

엑셀업로드 엑셀다운로드

조회 ① 추가 수정 삭제 출력

교육지원 : 0개사, 0명 | 재무 : 1

협력업자 지원현황 자료편집

② 지원분야 교육(인원수) 재무분야(세부) --선택--

상호 (주)에너지이엔씨 ③

사업자등록번호 101-86-35387

지원일자(수료일자) 2018-04-30

교육기관명 대한건설

지원성공

참석자 성명 주민번호(앞6자리)

관석지성명 주면번호 (6자리)

구입비용

저장 닫기

CAK 대한건설협회 2018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 평가 신청

① 추 가 (버튼)

- 협력업자 재무지원 실적이 있는 경우, “추가”버튼 클릭하여 입력 화면이 나타나면 지원내용 입력

② 지원분야

- 지원분야 중 “교육분야(법인수)”, “교육분야(인원수)” 중 택일

③ 상 호

- 상호 우측 🔍 를 클릭하여 ‘2. 협력업자 관리대장’에 기 입력된 업체 중 택일 후, 지원일자(교육수료일자), 교육기관명, 과정명, 참석자 성명, 주민번호(앞6자리) 입력

④ 엑셀다운로드 및 엑셀다운로드

- 교육지원한 협력업체가 많을 경우 우측상단에 엑셀양식을 다운받아 입력 후 업로드기능 활용

7 협력업자와 공동기술 개발 및 기술지원 평가

가. 개요

- 시공기술 및 공사관리기법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위한 기술개발지원, 공동개발 실적 등을 평가 (배점 : 대기업 10점, 중소기업 5점)

나. 평가방법

평가항목	점수 ⁴⁾
기술개발비용 지원 ¹⁾	협력업자 업체수별 각 2점
신기술·특허공법 공동개발 ²⁾	협력업자 업체수별 각 2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협력업체에 대한 하도급을 통해 시공한 공사가 있는 경우 ³⁾	협력업자 업체수별 각 1점

1) ‘기술개발비용 지원’ 판단기준

- 자사로부터 협력업체가 당년도 「기술개발비 수령 확인서」 상의 기술개발 지원 항목으로 1백만원 이상 수령한 경우

2) ‘신기술·특허공법 공동개발’ 판단기준

- 당년도('18년도)에 신기술로 지정 또는 특허 등록된 경우로서 원도급업자와 협력업자가 함께 공동개발자로 지정(등록)된 경우를 말함

– 단, 건설기술진흥법 또는 환경관련 법령을 적용받는 ‘건설시공’ 관련 신기술 또는 특허에 한해 인정

※ 산업발전법에 의한 신기술(산자부 소관),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신기술(과기부 소관), 실용신안법에 의한 ‘실용신안’은 불인정

3)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협력업체에 하도급에 의해 시공한 공사가 있는 경우’의 판단기준

-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협력업체와 당년도에 신규 하도급계약을 하고 그 계약일이 특허 또는 신기술의 유효기간 이내인 경우
 - 단, 해당 특허와 하도급계약건이 관련공종인 경우에 한해 인정하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가 특허 또는 신기술 보유업체와 사용권 계약을 한 경우도 인정 가능
- 특허권자가 개인일 경우 해당 협력업체의 대표자인 경우에 한해 인정

4) 점수 산정

- 각 평가항목별 해당되는 협력업체가 다수인 경우, 하나의 항목 내에서 최대 배점(대기업 10점, 중소기업 5점)까지 평가점수를 중복하여 산정 가능
 - ※ (예시) 대기업이 기술개발비용을 지원한 업체가 5개사인 경우 10점 부여

다. 사실확인서류

(1) 기술개발비용 지원

- ㉠ 협력업체의 당년도 기술개발비 수령 사실 확인서 (붙임서식 참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원본)
 - ㉡ 원·하도급업체의 통장사본 또는 금융기관이 확인한 거래내역서
- ⇒ ㉠, ㉡ 을 1set로 제출

(2) 신기술·특허공법 공동개발

- ㉠ 해당 특허증 또는 신기술 인증확인서 사본
 - ㉡ 해당 협력업자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서 사본
- ⇒ ㉠, ㉡ 을 1set로 제출

(3)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협력업체에 대한 하도급

- ㉠ 협력업체의 특허증 또는 신기술 인증확인서 사본
 - ㉡ 해당 협력업자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서 사본
- ⇒ ㉠, ㉡ 을 1set로 제출

라. 전산 입력요령

7. 협력업자 지원현황

① 추 가 (버튼)

- 협력업자 재무지원 실적이 있는 경우, “추가” 버튼 클릭하여 입력 화면이 나타나면 지원내용 입력

② 지원분야

- 개발비지원, 공동개발, 신기술보유 중 택일

③ 상 호

- “상호” 우측 🔍 를 클릭하여 ‘2. 2018년도 협력업자 관리대장’에 기 입력된 업체 중 택일 후, 지원일자, 지원금액 / 신기술명(특허명), 지원성과 입력

④ 엑셀다운로드 및 엑셀업로드

- 기술지원한 협력업체가 많을 경우 우측상단에 엑셀양식을 다운받아 입력 후 업로드기능 활용

8 상생협약체 운영 실적 평가

가. 개요

- 효율적 공사수행을 위해 공사현장별로 발주자, 협력업자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상생협약체 운영 실적을 평가 (배점 : 5점)

나. 평가방법

구분	산정방법	평가기준	점수
가. 상생협약체 운영 활성화	상생협약체 운영 현장수 ²⁾ 신규 공공공사 현장수 ¹⁾ 또는	20%이상 또는 20개 이상	2
		10%이상 또는 10개 이상	1
	상생협약체 운영 현장수 ²⁾	10%미만이고 10개 미만	0
나. 상생협약체 운영성과	발주자로부터 상생협약체 운영실적이 '우수'하다고 '표창' 또는 '감사패' 등 수상한 현장(1개 현장당 점수 부여) 상생협약체가 자체적으로 운영성과 ³⁾ 가 있다고 판단하는 현장 (1개 현장당 점수 부여)		2
			1

▶ '가', '나'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점수 인정

- 단, '가'는 최대 2점, '나'는 최대 3점까지 점수 부여 가능

1) '신규 공공공사 현장수'의 판단기준

- 당년도 신규 원도급 계약한 공공공사로서 건설공사 실적신고('19.2월)시 협회에 제출하여 평가받은 자료에 따름(장기계속공사는 차수별 계약 기준)
- 하도급계약 건이 없는 원도급 현장은 대상에서 제외

2) '상생협약체 운영 현장수'의 판단기준

- 1)의 신규 공공공사 현장 중 상생협약체를 구성·운영한 현장수를 합산
- 발주자 및 원·하도급업체간 '상생협약체 협정서' 및 '월간/주간 운영일지'에 따라 상생협약체 운영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상생협약체 협정서' 및 '운영일지'는 국토부에서 제시한 「건설산업 상생협력 표준모델 및 운영 매뉴얼」을 참고

3) '상생협약체 운영성과'의 판단기준

- 상생협약체 운영성과'를 입증하는 사실확인서류에 따라 상생협약체 운영성과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
 - ① 원도급사가 발주자로부터 상생협약체 운영과 관련하여 '표창', '감사패' 등을 수상한 경우 현장당 2점, ② 그 외에 원도급업자가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상생협약체 운영성과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당 1점 부여
 - 원도급업자가 자체평가하고 발주자가 확인한 '현장별 상생협력추진실적 평가표'를 토대로 평가하되, '상생협력 추진실적 평가표'상의 '평점'이 아닌 사실확인서류에 근거하여 별도 평가

☞ '상생협약체 운영성과' 예시

- ▷ 상생협약체 구성원간 고충 및 애로해소
- ▷ 공사현장 민원의 신속한 해결 및 협조
- ▷ 상생협약체 구성원간 교육협력, 기술교류 및 경영지원
- ▷ 건설공사 수행방법 개선, 건설근로자의 작업환경 개선 등

다. 사실확인서류

(1) 상생협약체 운영 활성화

- ㉠ 현장별 '건설산업 상생협약체 협정서' 사본(별지 참조) 및 관련 사진
 - 발주자(예:관리국장, 개발팀장) 및 원·수급인(예:대표자 또는 현장대리인) 모두가 날인한 협정서
 - ㉡ 현장별 '월간/주간 상생협약체 운영일지' 사본 (참석자 서명날인 포함, 별지 참조)
- ⇒ ㉠, ㉡ 을 1set로 제출

(2) 상생협약체 운영성과

- ㉠ 발주자가 확인한 '현장별 상생협력 추진실적 평가표' (붙임 참조)
 - 발주자의 실제 현장감독관이 확인한 서류
 - ㉡ 상생협약체 운영성과 사실확인서류
 - 발주자가 수여한 표창장, 감사패 등(현장소장 수상도 인정) 또는 운영일지 및 관련 사진 등 상생협약체 운영성과를 입증하는 서류
- ⇒ ㉠, ㉡ 을 1set로 제출

라. 전산 입력요령

8. 상생협의회 운영현황

상생협의회 운영현황

원도급공사

신규번호	2018-0001	공사명	테스트1
계약일자	2018-01	발주처명	건철

* 협의체 운영실적

② 성과구분: 운영성과 없음 협의체 구성일: 20181115

③ 내용: test

성과/효과: 광동개발 만 성과 있음

* 하도급 리스트 (선택된 업체만 상생협의회 운영, 실적으로만정)

입증	사업자번호	상호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가스시공	2068152288 (주)동양에너지
<input type="checkbox"/>	가스시공	2078150599 광동개발(주)

운영실적

구분	성과/효과	협의체구성일
광동개발 만 성과 있음	2018-11-15	
광동개발 만 성과 있음	2018-11-15	

※ “4. 업종별 협력업자와의 하도급계약 및 기성실적 상세현황”에 입력한 내용 중 신규 공공공사(원도급공사)만 목록으로 표시됨

① 수정(버튼)

- 상생협의회 운영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공사 건을 선택 후, 수정버튼을 클릭, 새로운 입력 창에 ‘협의체 운영실적’ 입력 및 해당 ‘협력업체’ 선택
 - ※ ‘상생협의회 운영’ 여부에 대한 판단은 발주자 및 원·하도급업체간 ‘상생 협의체 협정서’, ‘월간/주간 운영일지’ 등 내용에 따름

② 협의체 운영성과 구분

- 운영성과는 다음 중 택일
 - 운영성과우수(포상) : 원도급사가 발주자로부터 상생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표창’, ‘감사패’ 등을 수상한 경우
 - 운영성과우수(포상 없음) : 원도급업자가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상생협의회 운영성과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운영성과 없음

③ 협의체 운영성과

- 상생협의체 운영을 통해 나타난 성과를 입력함

④ 엑셀다운로드 및 엑셀업로드

- 상생협의체 운영현장수가 많을 경우 우측상단에 엑셀양식을 다운받아 입력 후 업로드 기능 활용

9 해외건설 공동도급 등 동반진출 실적 평가

가. 개요

- 협력업자와 해외건설사업에 공동도급을 통해 동반진출한 실적을 평가
(배점 : 3점)

나. 평가방법

평가항목	평가기준		점수
	대기업	중소기업	
해외건설공사 ¹⁾ 로서 협력업자와 동반진출한 건수 ²⁾	5건 이상	3건 이상	3
	3~4건	2건	2
	1~2건	1건	1

1) '해외건설공사'의 판단기준

- 2018년도 대한건설협회 및 해외건설협회에 제출한 건설공사 실적신고건 중 당년도에 해외에서 기성실적이 발생한 공사

2) '협력업자와 동반진출한 건수'의 판단기준

- 자사가 해외공사 진출시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의 형태로 협력업자와 동반 진출한 건수
- 하나의 해외건설공사 현장에서 여러 협력업체와의 동반진출 실적이 발생한 경우에도 1건으로 인정함
 - 수년에 걸쳐 이루어지는 공사인 경우에도 1회에 한해 건수 인정
- 공동이행방식인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가 체결한 하도급 동반진출건은 구성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다. 사실확인서류

- 별도 추가 제출 필요서류 없음
 - ※ '해외건설협회'에 신고·확인된 실적을 통해 확인·평가함

라. 전산 입력요령

9. 해외건설 공동도급 등 동반진출 현황

해외 동반진출 실적 입력합니다.

역설입도 역설다운도

조회 추가 수정 삭제 출력

동반진출협력건수 : 0건

20 공사명: 전체선택

순번	원도급공사(신청사 기준)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공사									
	신고번호	공사명	계약년월	준공년월	계약액	발주처	공사지역	구분	업종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계약일자	준공일자	총계약액	계약액
Showing 0 to 0 of 0 entries															

CAK 대한건설협회

2018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 평가 신청

※ 2018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시 협회에 공사실적 신고한 내용에 한함

해외 동반진출 실적 입력합니다.

역설입도 역설다운도

조회 추가 수정 삭제 출력

동반진출협력건수 : 0건

공사명:

해외건설 공동도급 등 동반진출 자료 편집

② 원도급공사

신고번호

공사명

계약년월

준공년월

당년도계약액

발주자명

국가명

※ 신고번호는 년도-순번(4자리)로 입력하세요

③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공사

업종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구분

계약일자

준공일자

총계약액

당년도계약액

저장 닫기

CAK 대한건설협회

2018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 평가 신청


① 추 가 (버튼)

- “추가” 버튼 클릭하여 입력 화면이 나타나면 이하 내용 입력

② 원도급공사 (신청사)

- 협력업체와의 동반진출 실적이 발생한 원도급공사의 신고번호, 공사명, 계약년월, 준공년월, 당년도기성액, 발주자명, 국가명을 입력

③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공사 (동반진출업체)

- 동반진출업체의 상호(우측 를 활용하여 “2. 2018년도 업종별 협력업자관리대장”에 입력되어 있는 업체를 선택하거나 직접 입력), 구분(공동도급, 하도급 선택), 계약일자, 준공일자, 동반진출업체의 총계약액 및 당년도 기성액을 입력

10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관련 표창 등 실적 평가

가. 개요

-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 상호협력을 모범적으로 이행하여 받은 표창 등 실적을 평가 (배점 : 2점)

나. 평가방법

평가항목 ¹⁾	점수 ²⁾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표창, 중앙행정기관장의 모범업체 선정 1회	2
시·도지사 표창 1회	1

1) 평가항목에 대한 판단기준

- 당년도에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과 관련하여 표창을 수상하거나, 모범업체에 선정된 경우 인정
- 대표자 또는 업체에 대한 표창 수상 등의 경우에만 인정되며, 현장소장 등 소속 임직원이 표창을 수상한 경우에는 불인정
-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외 기타 공공기관장, 시·군·구청장 등 기초자체단체장의 표창 수상은 불인정

2) 점수 산정방법

-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경우에도 최대 2점까지 인정

다. 사실확인서류

- 표창장 등 수상실적 증빙서류 사본

라. 전산 입력요령

10.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관련 표창 현황

표창받은 현황을 입력합니다.

백분업로드 백셀다운로드

조회 ① 추가 수정 삭제 출력

중앙행정기관의장: 1건 |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1건 | 수도권지방정부연계사업: 1건 | 권역별지방자치단체: 1건 전체: 1건

구분: 전체선택

구분	수여기관명	수여일자	수여내용
1	중앙행정기관의장		포상

건수 1건 (1 - 1)

표창 받으현황 자르권한

② 구분: 중앙행정기관의장

수여기관명

수여일자

③ 수여내용

저장 닫기

CAR 대안건설협회 2018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 평가 신청

① 추 가 (버튼)

- 표창 등 실적이 있는 경우, “추가” 버튼 클릭하면 입력창 생성

② 구 분

- 수여기관 종류를 선택하고, “수여기관명”에 구체적 기관명을 기재

③ 수여내용

- 표창장 상의 상호협력 관련 문구를 요약 기재

※ (예시) “원·하도급업체간 상생 및 협력증진”, “공정한 하도급 문화 형성 기여”

11 제재처분 감점

가. 개요

- 공사대금의 적정지급 또는 공사 하도급 관련하여 건산법, 하도급법,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상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기본점수(대기업은 10점, 중소기업 20점)에서 감점

나. 평가방법

제재처분 ¹⁾ 원인행위	평가기준 (처분유형)	감점 ²⁾
- 건산법 제25조제2항, 제29조~제38조 위반행위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지시 1회	-1
	과태료 1회	-2
- 하도급법 위반행위	고발 또는 벌금 1회	-3
-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제5호·제6호 위반행위	과징금 1회	-5
-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제1항제2호·제3호 위반행위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1회	-10

1) ‘제재처분’의 판단기준

- 당년도에 공사대금의 적정지급 또는 공사 하도급 관련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정 (처분일 기준)
- 집행정지가처분 등을 받거나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 대상에서 제외

2) 감점 점수 산정방법

- 제재처분 원인 행위가 관련 법령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 평가기준에 따라 처분유형별 감점을 모두 누계하여 대기업은 10점, 중소기업은 20점에서 차감하여 잔여점수 부여
- 건산법 상 “하도급통지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받은 건 중 하도급 계약 지연통보(하도급계약 후 30일 이후 통보) 또는 변경사항 미통보의 경우 1점만 감점

다. 사실확인서류

○ 별도 추가 제출 필요서류 없음

※ 공정거래위원회, KISCON, 협회 통보내역 등과 상호·대조 확인

라. 전산 입력요령

11. 제재처분 받은 현황

① 추 가 (버튼)

- 제재처분건이 있는 경우, “추가”버튼 클릭하면 입력창 생성
- 제재처분건별로 “모두” 입력할 것

② 구 분

- 제재처분 종류를 선택하고, “처분사유”에 구체적 내용을 기재
※ (예시) 하도급대금 미지급, 일괄하도급 금지 위반 등

12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한 임금지급 실적 평가

가. 개요

- 건설공사 임금 체불방지를 위해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실적을 반영하여 가점 부여 (최대 3점)
- ※ 정부의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17.12.12.)에 따라 ’18년 신설(’18.5.1. 시행)

나. 평가방법

산정방법	평가기준 ⁵⁾			
	대기업	가점	중소기업	가점
$\frac{\text{시스템을 통한 임금 지급 민간공사 현장수}^2)}{\text{전체 민간공사 현장수}^1)} \times \frac{\text{시스템을 통한 임금 지급 개월수 평균값}^4)}{\text{시스템 활용 현장의 총공사 개월수 평균값}^3)} \times 100$	70%이상	+ 30	60%이상	+ 30
	60%~70%미만	+ 25	50%~60%미만	+ 25
	50%~60%미만	+ 20	40%~50%미만	+ 20
	40%~50%미만	+ 1.5	30%~40%미만	+ 1.5
	30%~40%미만	+ 1.0	20%~30%미만	+ 1.0
	20%~30%미만	+ 0.5	10%~20%미만	+ 0.5

1) ‘전체 민간공사 현장수’ 판단기준

- 당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서 협회에 제출한 모든 ‘민간공사’ 중 당년도에 기성 실적이 발생한 현장수를 누계
- 단, 원도급 공사금액이 5천만원 미만 또는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현장, 하도급대금 직불 현장은 제외

☞ 민간공사의 범위

-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서 발주한 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사

2) '시스템을 통한 임금 지급 민간공사 현장수' 판단기준

- 1)의 민간공사 현장 중 다음의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한 임금지급 인정기준'에 따라 협력업자의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현장수를 누계

☞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한 임금지급 인정기준

1. 여러 건의 하도급공종계약이 체결된 현장에서 1개의 공종에 대해서만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활용하여 임금지급 하는 경우
 - 현장内の 포함된 하도급기성이 발생한 '전체' 하도급계약 건에 대해 임금 지급 여부를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여러 개의 하도급공종계약 중 단지 1개의 공종에 대해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기타 공종의 공사 중단 등 특별한 사정 고려하여 판단 필요
2.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일부근로자가 현장에서 현금이나 타인 계좌로 지급받는 경우
 - 사전에 등록된 근로자 본인의 계좌로 지급된 경우에 한해 인정하며,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
 - 다만, 타인의 계좌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SMS 등으로 근로자 본인에게 임금 지급사실을 통보한 경우에 한해 인정 가능
 - ※ 신용불량자 등의 경우 본인명의 계좌개설이 곤란하여 타인계좌 활용 중
3. 근로자 임금을 지연 지급시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동 임금을 추후 지급하는 경우
 - 임금의 경우 근로계약에 따른 대가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으며 통상 계속적·정기적인 형태로 지급*이 이뤄져야 하므로 근무월의 익월말까지 지급되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하도급사의 임금 미청구, 근로자 계좌이상 등 원도급사의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면제 가능
 - * 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 '임금'의 성질
4. 공동이행방식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건설근로자 임금 지급시 구성사도 동일하게 적용

3) '시스템 활용 현장의 총공사개월수 평균값' 판단기준

- 2)의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활용 공사현장'별 '공사개월 수'를 모두 누계한 후 그 평균값으로 산정
- '공사개월 수'는 당년도 협회 건설공사 실적신고시 제출한 자료의 계약 연월, 준공(예정)연월을 기준으로 계산
 - 단, 계약연월이 금년도 평가대상년도 기간(5.1.~12.31.) 이전이면 5.1.부터, 준공(예정)연월이 금년도 평가대상년도 기간 이후면 12.31.까지로 설정

4) '시스템을 통한 임금 지급 개월수 평균값' 판단기준

- 3)의 공사개월수 중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실제 임금이 지급된 대상월(기성월) 수를 누계한 후 그 평균값으로 산정
 - 단,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대상월의 임금이 지급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다수의 협력업자 현장에서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 임금이 최초로 지급된 현장과 마지막으로 지급된 현장을 시작월과 종료월로 각각 적용하여 개월수 산정

5) 평가기준 적용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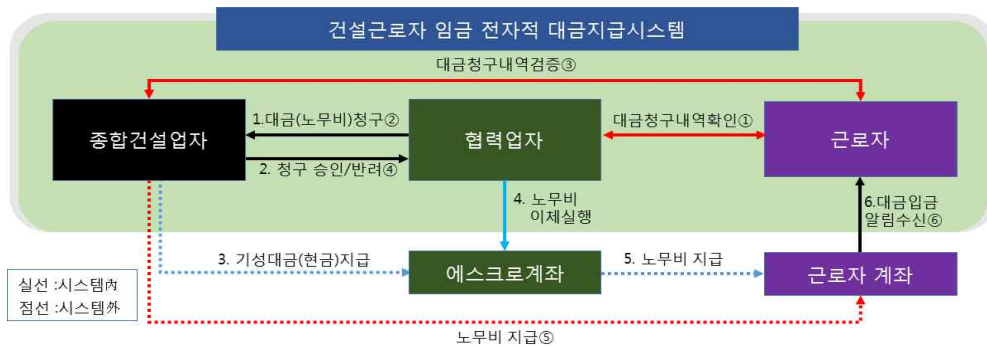
- 평가산식에 따른 실적비율(백분율)에 따라 최대 3점의 '가점' 부여
 - 단, 총평가점수 100점을 한도로 가점 적용
- 실적비율 산정시 소수 첫째자리(미만절사)까지 산출

다. 사실확인서류

- ㉠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화면캡처 출력물
(종합건설업체명, 현장명, 임금지급 대상월, 월별지급일자 등 포함)
- ㉡ 공동수급협정서 사본
(공동도급의 구성사로 참여한 경우, 대표사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한 경우에 한함)
- ㉢ 현장별 월별 퇴직공제 납입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가입 확인서(현장근로자수 확인용)
⇒ 현장별로 ㉠,㉡,㉢을 1set로 제출

- ▷ 원수급인이 지급한 임금에 대해 건설근로자 계좌로의 송금만 허용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협력업자의 계좌를 통해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에 대해 협력업자의 인출 제한기능을 갖출 것 (에스크로계좌 등 활용)
- 다만, 협력업자 동의하에 종합건설업자가 협력업자 에스크로계좌를 통하지 않고 직접 근로자 계좌로 지급하는 경우도 실적으로 인정
- ▷ 원수급인가 지급할 근로자 임금에 대해 협력업자의 대금청구 및 승인 기능이 있어야 하며, 원수급인 및 협력업자가 청구·승인 및 지급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할 수 있을 것
- ▷ 근로자에게 문자 등으로 임금 지급 등을 알리는 기능을 갖출 것

<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흐름도 >



- * 종합건설업자가 협력업자의 에스크로계좌를 통해 노무비 지급 : 1~6
- * 종합건설업자가 협력업자의 임금청구에 따라 직접 근로자 계좌로 지급 : ①~⑥

- ▷ 필요시 평가기관에서 해당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에 대하여 검증 실시

◇ 2018년도 3개 민간공사 현장이 있는 경우

공사명	공사기간		2018년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활용 임금지급			
	계약년월 ~ 준공예정년월	개월수	활용 여부	임금지급 대상월	(임금지급 대상월별) 최초지급일	개월수
A 현장	17.02~19.02	8개월	활용	1~12월분	(1월분) 18.02.10 (12월분) 19.01.25	8개월
B 현장	18.06~20.04	7개월	활용	7~11월분	(7월분) 18.07.25 (11월분) 18.12.05	5개월
C 현장	18.10~19.08	3개월	미활용	-	-	-

- ① 전체 민간공사 현장수 : ▶ 3건 (A, B, C 현장)
- ②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임금 지급한 현장수 : ▶ 2건 (A, B현장)
- ③ 공사기간 개월수 (임금지급 현장에 대한 평균값) : ▶ 7.5개월 = (8개월+7개월) / 2
 -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임금을 지급한 A현장은 공사기간은 당년도분만 포함하므로 18.1~12월까지 12개월이나, '18년실적은 5월 이후만 포함되므로 5~12월까지 8개월, B현장은 6~12월까지 7개월 (C현장은 제외)
- ④ 임금지급 개월수 (임금지급 현장에 대한 평균값) : ▶ 6.5개월 = (8개월+5개월) / 2
 - 임금지급대상월을 기준으로 월별 지급일자가 확인된 현장만 포함하므로 A현장은 1~12월분까지 12개월이 인정되어야 하나 '18년실적은 5월분부터 포함되므로 5~12월분까지 8개월, B현장은 7~11월분까지 5개월 (12월분은 지급일자 확인이 되지 않아 제외)

$$\Delta \text{평가산식} : \frac{\text{②} 2}{\text{①} 3} \times \frac{\text{④} 6.5}{\text{③} 7.5} \times 100 = 57.777777\dots = 57.7$$

⇒ 평가비율이 50%이상이므로 신청업체가 대기업이라면 2점, 중소기업이라면 2.5점 가점

라. 전산 입력요령

12. 민간공사 대금지급시스템 활용을 통한 임금지급

① 추 가 (버튼)

- “추가” 버튼 클릭하여 입력 화면이 나타나면 이하 내용 입력

② 원도급공사 (신청사)

- 민간공사로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한 원도급공사의 신고번호, 공사명, 계약년월, 준공년월, 공사기간, 당년도기성액, 발주자명을 입력

③ 시스템 활용기간

- 활용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명을 입력하고, 시스템의 청구승인지급기능, 실시간 지급확인기능, 인출 제한기능의 유무를 선택(Y, N)
- 시스템 활용 시작월, 종료월을 입력하고 활용기간을 개월수로 입력

④ 엑셀다운로드 및 엑셀업로드

-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활용 실적이 많을 경우 우측상단에 엑셀양식을 다운받아 입력 후 업로드기능 활용

13 신청내용 확인 · 제출 및 서류 출력

가. 신청내용 확인

13. 신청서표지

전체 메뉴 < 12. 민간공사 대금지급시스템 활용을 통한 임금지급 13. 신청서표지 14. 내용 확정(내표전송) >

조회 저장 출력

① 총기성액 42,688 (당년도 국내기성액 : 42,688 + 종합업체간하도급실적 : 0) ※2018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 내용입력

총합력업체 법인수계 : 3063

평가분류	상세내용	② 신청점수
1. 공동도급실적 (10점)	· 가. 공동도급 기성실적 건수 대비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기성실적 건수 비율(5점) · 나.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참여율(5점)	0 0
2. 하도급실적 (20점)	· 총기성액 대비 협력업자와의 당년도 하도급기성실적	0
3. 협력업자육성 (58점)	· 가. 협력업자 재무지원(40점) (1) 하도급 대금 및 지급 시기등의 적정성 (30점) ① 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15점) ② 현금성 결제비율 (8점) ③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5점) ④ 전자하도급계약 (2점) (2) 협력업자 재무 및 교육지도 (10점) ① 협력업자의 재무지원 법인수 (5점) ② 협력업자의 교육지원 법인수 또는 인원수 (5점) · 나. 공동기술개발 및 기술지원(10점) · 다. 상생협력채 운영(5점) · 라. 해외건설 공동도급등 동반건설실적(3점)	11 11 0 0 0 0 0 0 0 0 0 0
4. 신인도 (12점)	· 가.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 건설업자간 상호 협력과 관련하여 표창등을 받은 실적(2점) · 나. 공사대금의 적정지급 또는 공사하도급과 관련하여 처벌받은 실적 (10점) (1) 시정권고·시정명령 지시 0회 (2) 과태료 1회 (3) 고발·발급 0회 (4) 과징금 0회 (5) 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 0회	2 8
5. 가점 (3점)	· 가. 민간공사 대금지급시스템 활용을 통한 임금지급	0
6. 신청점수 합계	간항특별 신청점수의 합	21



2018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 평가 신청

① 총기성액 (국내분)

- “당년도 국내기성액”과 “종합건설업체간 하도급실적”을 합산한 금액이 자동으로 입력됨

가. 당년도 국내기성액

- 건설공사 실적신고('19.2월)시 협회에 제출하는 '18년도 국내기성액 (누락신고분 제외)이 자동 입력됨(수정입력 가능)
- “2018년도 건설공사실적신고 총괄표 상의 합계(1+2)”중 “국내기성액 합계(누락분제외)” 금액으로 평가됨

나. 종합건설업체간 하도급실적

- “업종별 협력업자와의 하도급계약 및 기성실적 상세현황”에서 종합건설업체간 하도급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실적의 합이 자동 입력됨

○ 미입력시 하도급실적 비율이 산정되지 않음 (0점 처리)

- 상호협력평가 신청시 업체에서 작성(입력)한 총기성액과 '18년도 건설공사실적 검토 후 확정된 금액이 다를 경우에는 협회에서 확정·평가한 총기성액으로 평가함

※ 6월 중 중간평가결과 통보시 반드시 확인 요망

② 신청점수

○ 신청업체가 입력한 협력업자의 하도급기성실적, 지원실적 등에 의하여 자동계산되어 입력됨

나. 신청내용 확정 및 자료전송

14. 내용 확정(자료전송)

2018년도 상호협력 평가 내용 확인 및 확정	
1. 업체 개요 및 작성담당자 정보	작성완료
2. 2018년도 협력업자 관리대장	3166 건
3. 신청 점수	40 점

이전으로 (작성내용을 다시 확인 하겠음) **① 신청내용확정** (내용확정 시 자료전송 됨)

신청내용확정 클릭 시 재입력이나 수정은 되지 않으니 신고내용을 재차 확인 후 신청내용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내용확정후 수정 또는 추가 입력이 필요한 경우 각 시도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시도회	서울
주소	서울시 강남구 연주로 711 (건설회관 6층)
TEL	(02)547-7301 ~3
FAX	(02) 545-1761

① 신청내용확정 (버튼)

○ 신청내용 확정(버튼 클릭)시 자동으로 전송됨

○ 상호협력평가 신청기한(~'19.3.15) 이내에 신청내용을 수정코자 하는 경우 회원사는 소속 시도회, 비회원사는 본회 정보관리실로 문의

※ 신청기한 경과 후에는 기존 자료확정 내용 수정 불가

다. 서류출력

15. 서류출력

전체 메뉴 <
14. 내용 확정(자료전송)
15. 서류출력

① 전체출력

1. 신청서표지(대기업)
2. 업종별 협력업자 관리대장
3. 공동도급 공사별 기성실적 현황
4. 업종별 하도급 계약 및 기성실적 상세현황
5. 업종별 협력업자별 하도급 기성실적 현황
6. 하도급대금 및 지급시기 등의 적정성 현황
7. 협력업자 지원현황
8. 상생협력체 운영현황
9. 해외건설 공동도급 등 동반진출 현황
10.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관련 표창현황
11. 제재처분 받은 현황
12. 민간공사 대금지급시스템 활용을 통한 임금지급
13. 협력업체(사업자)별 하도급기성실적 현황

▶ 서류출력 후 신고기간내에 접수해야 신청완료 됩니다.

제출 시도회	서울
주소	서울시 강남구 연주로 711 (건실회관 6층)
TEL	(02)547-7301 ~3
FAX	(02) 545-17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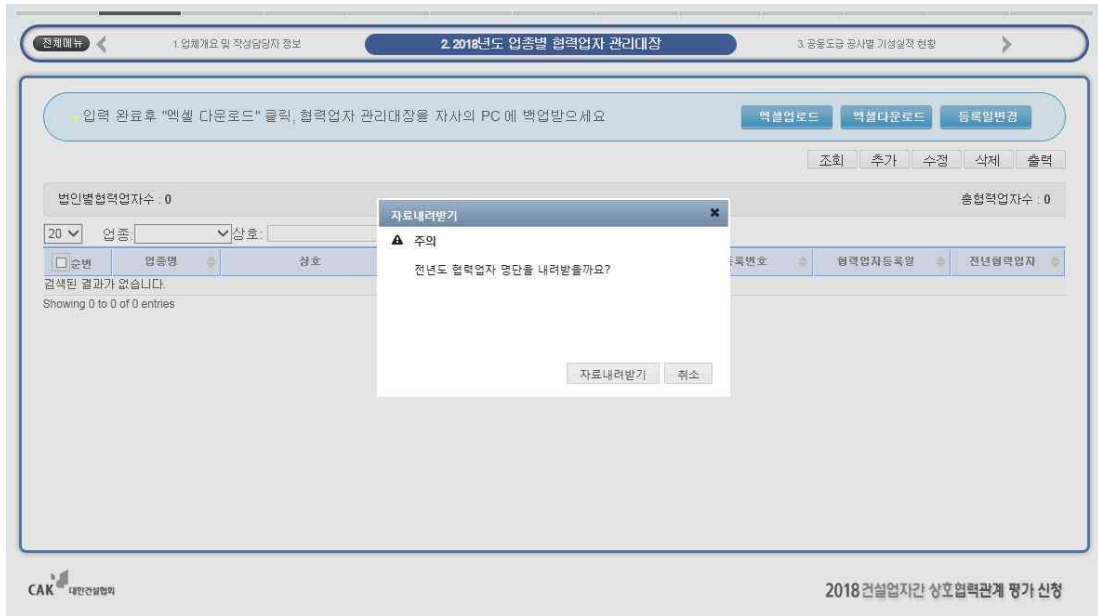
① 전체출력 (버튼)

- 출력 후 해당 내용을 반드시 확인
 - 협회 제출한 신청 서류의 내용과 온라인 전송자료가 다를 경우, 협회에 제출한 서류에 의해 평가되므로 충분히 확인 후 제출
- 출력 순서대로(“해당없음” 포함) 서류를 합철하여 제출하되 반드시 **사실 확인서류를 첨부**
- 신청서 표지상의 대표자 확인란에 반드시 **“대표자 날인(사용인감도 가능)”** 후 제출할 것
- 자료 전송 1시간 이후 “실적신고 및 상호협력평가 신청 안내 홈페이지 (<http://siljuk.cak.or.kr>)”에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전송결과 확인 가능**
- 온라인 자료전송만 실시하고 신청마감일('19.3.15)까지 상호협력평가 신청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신고 업체로 처리되어 상호협력평가를 받을 수 없음

IV. 전산 프로그램

사용상 편의 기능

1 전년도 자료 내려받기



- “2. 2018년도 업종별 협력업자 관리대장” 조회시 입력된 자료가 없는 경우, 사용자가 “자료내려받기” 가능
 - 전년도 협회 상호협력평가를 신청하여 인정받은 자료를 내려 받음
 - 내려 받은 자료는 반드시 당年度の “협력업자등록일자” 입력 후 “저장”을 클릭

2 엑셀파일 전환기능



(1) 엑셀다운로드

- 개별건별로 직접 입력하지 않고 “엑셀파일”로 저장된 자료를 불러와서 일괄 입력하는 기능
 - 엑셀파일에 입력된 데이터의 정확성을 체크, 오류가 있으면 입력되지 않으므로 “알림” 메시지를 확인, 오류 수정 후 재시도

☞ 입력오류 사례 (업종별 협력업자관리대장의 경우)

- ▷ 협력업자 등록일자를 2018년도 이전으로 입력하는 경우 또는 숫자외 다른 문자를 입력하는 경우 (입력오류 예시 : 20170101, 2018-03-01)
- ▷ 전년도에 해당업체를 협력업자로 협회 제출하지 않았으나, 전년도 협력업자로 표기(Y)하여 입력하는 경우 등

- 엑셀파일을 불러들인 후 반드시 “저장”을 클릭

※ 예시파일을 참고하여 반드시 동일한 서식으로 작성하고, 상단 제목줄은 수정 또는 삭제하지 말 것

(2) 엑셀업로드

- 입력된 자료를 엑셀파일로 업로드 하는 기능

※ 엑셀파일 예시

업종 코드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건설업 등록번호	전화번호	협력업자 등록일자	주소	← 제목줄
02	주대한건설	1208102922	홍길동	서울01-05	02-1234-1234	20130125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03	주대한건설	1208102922	홍길동	강남-26-05	02-1234-1234	20130125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03	주한국건설	1208102921	이몽룡	서울03-02	02-3456-7896	201303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 업종은 “코드”로 변환하여 입력해야 함
(불러온 자료 sheet1에서 코드 확인가능)

3 항목별 정렬 및 검색기능



CAK 대한건설협회

2018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 평가 신청

- “업종”,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상단 제목줄의 해당 항목명을 클릭하여 정렬 가능
 - 각 항목명에 ▲, ▼이 보이면서 해당 항목이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정렬
- 입력된 목록에서 마우스 두 번 클릭 하는 경우, 특정업체에 대한 자료 편집 가능

4 입력자료 자동 저장

- 2018년도 상호협력평가 신청프로그램의 모든 자료는 사용자PC에 저장되지 않고 협회 서버에 자동 저장되므로 별도의 백업처리가 필요 없음
 - 내년도 상호협력평가 신청시 금년도 신청분의 내용이 자동내려받기 가능

신청 프로그램 사용상 문의처
: 02-3485-8247~9

V. 참고 자료

<참고1>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 ❖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 ❖ [별표1] 대기업의 협력평가기준
- ❖ [별표2] 중소기업의 협력평가기준
- ❖ [별지1호서식] ~ [별지13호서식]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시행 2018.5.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60호, 2018.3.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호,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이하 "종합건설업자"라 한다)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이하 "전문건설업자"라 한다)간 및 대기업인 건설업자와 중소기업인 건설업자간의 상호협력관계에 관한 권장사항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합건설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 "전문건설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대기업인 건설업자"란 토목건축공사사업의 시공능력공시금액이 조달청의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등록 및 운용기준 1등급에 해당하는 종합건설업자를 말한다.
4. "중소기업인 건설업자"란 제2조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종합건설업자를 말한다.
5. "협력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종합건설업자 및 대기업인 건설업자에 등록된 건설업자를 말한다.
6.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이란 종합건설업자가 지급하는 건설근로자 임금이 금융기관 시스템(건설사의 인출제한 기능)과 연계하여 건설근로자 계좌로 송금만 허용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협력업자의 등록업종 및 구분) ①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업자의 등록업종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요하는 업종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건설업의 업무내용에 따라 세부공종별로 할 수 있다.

②종합건설업자가 협력업자로서 등록하고자 할 경우 시공의 전문화를 위하여 건설공사의 종류별로 등록을 받거나 공동도급 등의 시행을 위하여 지역별로 등록받을 수 있다.

제4조(시공기술·정보 등의 상호교류) ①대기업인 건설업자 및 종합건설업자와 협력업자는 시공기술 및 공사관리기법 등의 상호교류와 협력 등을 통하여 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②종합건설업자는 협력업자에게 시공계획서 및 견적서 작성능력 등에 관한 기술을 전수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제5조(상호 보안을 통한 협력) 종합건설업자와 협력업자는 공종별, 업역별로 상호보안을 통하여 협력해 나가도록 서로 협조하고, 기획·시공·감리·사후관리 등 분야별로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상생협의체 구성·운영) ①종합건설업자는 효율적인 공사수행을 위하여 공사현장별로

발주자, 협력업자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상생협의체의 운영실적에 대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업자에 대한 지원) ①종합건설업자는 협력업자로 등록된 자 중 시공기술 및 공사관리에 관한 능력이 우수한 자를 대상으로 우수협력업자로 선정할 수 있으며, 우수협력업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입찰 및 인력·자금·기술개발 지원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②종합건설업자는 건설공사를 공동도급하거나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 협력업자를 공동수급인이나 하수급인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③종합건설업자가 협력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서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을 사용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표창실적 등이 있는 우수업자에 대한 우대) 종합건설업자가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 상호협력을 모범적으로 이행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평가에서 우대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의해 하도급거래가 모범적인 업체로 선정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의2(해외건설 동반진출에 대한 우대 등) 종합건설업자가 협력업자와 해외 건설사업에 공동도급 등 동반 진출시 제11조제1항에 따른 평가에서 우대할 수 있다.

제9조(협력업자에 대한 지원 등) ①종합건설업자는 협력업자의 경영합리화, 노무·시공관리 개선, 기술 및 기능향상 등을 위한 재무·교육 및 기술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②종합건설업자는 제1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시설,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업자에 대한 시공평가 및 관리) ①종합건설업자는 협력업자에 대한 시공평가를 실시하는 등 우량한 업체가 협력업자로 등록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삭 제>

제10조의2(가점우대 대 등) ①종합건설업자가 민간 건설공사에서 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실적이 있는 경우 3점 이내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종합건설업자가 협력업자에게 지급한 임금이 건설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도록 금액의 청구·승인 및 지급에 관한 기능
2. 제1호에 따른 청구·승인 및 지급에 대하여 종합건설업자 및 협력업자가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기능
3. 종합건설업자가 입금한 임금을 협력업자가 인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하는 기능 (예 : 에스스로 계좌) 등
4. 근로자에게 문자 등으로 임금 지급 등을 알리는 기능

③제12조의 평가기관은 종합건설업자가 제출한 임금지급 실적과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금지급시스템 기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종합건설업자가 활용하고 있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검증할 수 있다.

제11조(평가기준 등) ①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0조제3호에 의한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의 평가는 대기업인 건설업자의 경우에는 별표 1, 중소기업인 건설업자의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기건설공사의 기성실적도 포함한다.

제12조(평가기관)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3항제8호에 따라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에 관한 평가를 대한건설협회에 위탁한다.

제13조(평가시기)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평가의 공시와 연계하여 실시하며, 그 결과는 당해연도 6월말까지 발표한다.

제14조(평가방법) ①제11조의 기준에 따라 종합건설업자를 평가하는 때에는 이를 전산처리하여야 한다.

②협력업자 육성을 위한 공사대금의 적정지급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공사대금에 대한 적정한 대가의 반영여부, 선금·기성금·준공금 등을 지급기간내 지급하였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평가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재한 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 다만, 2012년 1월 12일 이전에 제재한 실적은 반영하지 아니한다.

④대한건설협회의 장은 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한전문건설협회의 장 등 다른 건설업자 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서류의 제출) ①「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평가를 받고자 하는 대기업인 건설업자는 별지 1호, 중소기업인 건설업자는 별지 2호 서식에 의한 평가신청서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다음년도 3월 15일까지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업종별 협력업자 관리대장 (별지 3호 서식)
2. 공동도급공사별 기성실적 현황(별지 4호 서식)
3. 업종별 협력업자별 하도급 기성실적 현황(별지 5호 서식)
4. 업종별 하도급 계약 및 기성실적 상세현황(별지 6호 서식)
5. 하도급대금 등 협력업자 재무지원 현황(별지 7호 서식)
6. 협력업자 지원 현황(별지 8호 서식)
7. 상생협업체 운영 현황(별지 9호 서식)
8.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관련 표창 현황(별지 10호 서식)
9. 공사대금 적정지급 또는 하도급 관련 제재처분 받은 현황(별지 11호 서식)
10. 해외공사 공동도급 등 동반진출 실적 현황(별지 12호 서식)
11. 민간공사에서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을 활용한 임금지급 실적 현황(별지 13호 서식)

②평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서류에 따라 평가하되, 허위작성의 혐의가 있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가로 세부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평가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3년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허위신청 내용을 토대로 평가된 자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PQ심사 우대를 중지한다.

제16조(평가에 따른 우대사항) ① 제11조에 따라 상호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우수한 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공사 발주때 우대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삭 제>
2. PQ심사시 우대사항
 - 가. 90점이상 : 5점 가산
 - 나. 80점이상 ~ 90점미만 : 4점 가산
 - 다. 70점이상 ~ 80점미만 : 3점 가산
 - 라. 60점이상 ~ 70점미만 : 2점 가산

② 평가결과가 우수한 자에 대한 우대는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삭 제>
2. PQ심사 때 : 평가결과 발표일부터 다음년도 평가결과 발표일 전일까지 우대

제17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8-160호, 2018.3.1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대기업의 협력평가기준

평가분야	항목별	배점
1. 공동도급 실적(10점)	가. 공동도급 기성실적 건수 대비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기성실적 건수 비율	5
	(1) 60%이상	5
	(2) 50%이상 ~ 60%미만	4
	(3) 40%이상 ~ 50%미만	3
	(4) 30%이상 ~ 40%미만	2
	나. 협력업자의 공동도급 참여율 (자사 공동도급 기성액 대비 협력업자의 공동도급 기성액 비율)	5
	(1) 30%이상	5
	(2) 25%이상 ~ 30%미만	4
(3) 20%이상 ~ 25%미만	3	
(4) 10%이상 ~ 20%미만	2	
2. 하도급실적 (20점)	가. 총기성액 대비 협력업자의 하도급 기성실적 비율	20
	(1) 50%이상	20
	(2) 40%이상 ~ 50%미만	15
	(3) 30%이상 ~ 40%미만	10
	(4) 15%이상 ~ 30%미만	5

평가분야	항목별	배점
3. 협력업자 육성(58점)	가. 협력업자 재무지원	40
	(1) 하도급대금 및 지급시기 등의 적정성	30
	① 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15
	② 현금성 결제비율	8
	③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5
	④ 전자 하도급계약	2
	(2) 협력업자의 재무 및 교육지원	10
	① 재무분야	5
	② 교육분야	5
	나. 협력업자와 공동기술 개발 및 기술지원	10
(1) 기술개발비용 지원(협력업자당 각2점)		
(2) 신기술·특허공법 공동개발 (협력업자당 각2점)		
(3)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협력업체에 하도급에 의해 시공한 공사가 있는 경우 (협력업자당 각1점)		
다. 상생협업체 운영	5	
(1) 전체 현장수 대비 협업체운영 현장수 비율	2	
① 20%이상 또는 20개이상	2	
② 10%이상 또는 10개이상	1	
(2) 협업체 운영실적	3	
라. 해외건설 공동도급 등 동반진출 실적	3	
(1) 5건 이상	3	
(2) 3건~4건	2	
(3) 1건~2건	1	

4. 신인도(12점)	가.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 건설업자간 상호 협력과 관련하여 표창 등을 받은 실적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표창,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모범업체 선정 1회 (2) 시·도지사 표창 1회	2 2 1
	나. 공사대금의 적정지급 또는 공사하도급과 관련하여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받은 실적 (1)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지시 1회 (2) 과태료 1회 (3) 고발 또는 벌금 1회 (4) 과징금 1회 (5)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1회	10 (없는 경우) -1 -2 -3 -5 -10
5. 가 점 (3점)	가. 민간공사에서 원수급인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실적 [(임금지급한 공사현장수/전체 민간공사현장수) ×(대금지급 개월수/공사기간 개월수)×100] (1) 70% 이상 (2) 70%~60% (3) 60%~50% (4) 50%~40% (5) 40%~30% (6) 30%~20%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0.5점

[별표 2]

중소기업의 협력평가기준

평가분야	항목별	배점
1. 하도급실적 (25점)	가. 총기성액 대비 협력업자의 하도급 기성실적 비율	25
	(1) 45%이상	25
	(2) 35%이상 ~ 45%미만	20
	(3) 25%이상 ~ 35%미만	15
	(4) 15%이상 ~ 25%미만	10
2. 협력업자 육성(53점)	가. 협력업자 재무지원	40
	(1) 하도급대금 및 지급시기 등의 적정성	30
	① 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15
	② 현금성 결제비율	8
	③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5
	④ 전자 하도급계약	2
	(2) 협력업자의 재무 및 교육지원	10
	① 재무분야	5
	② 교육분야	5
	나. 협력업자와 공동기술 개발 및 기술지원	5
	(1) 기술개발비용 지원 (협력업자당 각2점)	
	(2) 신기술·특허공법 공동개발 (협력업자당 각2점)	
	(3)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협력업체에 하도급 시공한 공사가 있는 경우(협력업자당 각1점)	
	다. 상생협업체 운영	5
	(1) 전체 현장수 대비 협의체운영 현장수 비율	2
① 20%이상 또는 20개이상	2	
② 10%이상 또는 10개이상	1	
(2) 협의체 운영실적	3	
라. 해외건설 공동도급 등 동반진출 실적	3	
(1) 3건 이상	3	
(2) 2건 이상	2	
(3) 1건 이상	1	

평가분야	항목별	배점
3. 신인도(22점)	가.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 건설업자간 상호 협력과 관련하여 표창 등을 받은 실적	2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표창,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모범업체 선정 1회	2
	(2) 시·도지사 표창 1회	1
	나. 공사대금의 적정지급 또는 공사하도급과 관련하여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받은 실적	20 (없는 경우)
	(1)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지시 1회	-1
	(2) 과태료 1회	-2
	(3) 고발 또는 벌금 1회	-3
	(4) 과징금 1회	-5
	(5)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1회	-10
4. 가 점 (3점)	가. 민간공사에서 원수급인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실적 [(임금지급한 공사현장수/전체 민간공사현장수) × (대금지급 개월수/공사기간 개월수) × 100]	
	(1) 60% 이상	+3.0점
	(2) 60%~50%	+2.5점
	(3) 50%~40%	+2.0점
	(4) 40%~30%	+1.5점
	(5) 30%~20%	+1.0점
	(6) 20%~10%	+0.5점

비고 (별표 1과 별표 2에 모두 적용)

1. 대기업의 공동도급실적 산정과 관련하여 당해 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협력업자가 1인 이상인 경우 그 공사에 대해서는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기성실적’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단, ‘공동도급 기성실적’이 최소 1백만원이상 있는 경우에 한 한다.
2. 대기업인 건설업자가 공동도급 기성실적이 없는 경우 ‘공동도급 기성실적 건수 대비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기성실적 건수’ 비율은 1점(기본점수)를 부여한다.
3. ‘협력업자의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등 재무지원은 최소 1백만원이상 지원한 경우를 말한다.
4. 상생협약체 운영실적 산정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상생협약체 운영을 의무화하고 있는 공사현장은 ‘전체 현장수 대비 협약체 운영 현장수’ 비율에서 제외한다. 다만, 자사의 공사현장이 모두 상생협약체 운영 의무 대상인 업체의 경우 ‘전체 현장수 대비 협약체 운영 현장수’ 비율을 1점(기본점수)으로 한다.
5. 교육지원 실적은 종합건설업자가 협력업자의 임직원을 중앙행정기관이 승인한 교육훈련기관 및 교육훈련과정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별지 1호 서식]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신청서 [대기업]			
신청인	①상 호		②대 표 자
	③본사소재지		④전 화 번 호
	⑤법인(주민)등록번호		⑥업종 및 등록번호
<p>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60호에 의거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에 관한 평가를 신청합니다. 20</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국토교통부장관 귀하 (단위 : 백만원, %)</p>			
⑦총기성액(A)(국내분)		⑧총현장수(B)(국내분)	
⑨총공동도급기성실적건수(C)(국내분)		⑩총협력업자수계(D)	
1. 공동도급실적(10점)			
가. 공동도급 기성실적 건수 대비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기성실적 건수 비율 (5점)		(1)협력업자와 공동도급한 당년도 기성실적 건수(H) : (2)총공동도급 기성건수 대비 비율(H/C) :	신청점수
나. 협력업자의 공동도급 참여율(5점)		(1)협력업자의 공동도급 기성액(F) : (2)협력업자와 공동도급한 당년도기성액(E) : (3)협력업자의 공동도급 참여율 (F/E) :	신청점수
2. 하도급실적(20점)			
총기성액 대비 협력업자와의 당년도 하도급기성실적 (20점)		(1)당년도 하도급기성액(G) : (2)총기성액 대비 비율(G/A) :	신청점수
3. 협력업자 육성(58점)			
가. 협력업자 재무지원 (40점)		(1)하도급대금 및 지급시기 등의 적정성 (30점) ①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15점) ②현금성 결제비율 (8점) ③하도급대금 조기지급 (5점) ④전자하도급계약 (2점) (2) 협력업자의 재무(5점) 및 교육지원 (5점)	신청점수
나. 공동기술개발 및 기술지원 (10점)		(1)기술개발비용 지원 (2)신기술·특허공법 공동개발 (3)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협력업체에 하도급 시공	신청점수
다. 상생협업체 운영 (5점)		(1)전체 현장수 대비 협의체 운영 현장수(2점) (2)협의체 운영실적(3점)	신청점수
라. 해외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 동반진출 실적 (3점)		(1)해외 동반진출 건수 : 건 * 5건 이상 3점, 3~4건 2점, 1~2건 1점	신청점수
4. 신인도 (12점)			
가.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과 관련하여 표창 등을 받은 실적 (2점)		(1)중앙행정기관의장 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표창(2점) : 회 (2)중앙행정기관의장의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2점) : 회 (3)시·도지사 표창(1점) : 회	신청점수
나. 공사대금의 적정지급 또는 공사 하도급과 관련하여 처분 받은 실적(10점)		(1)시정 권고·시정 명령·지시 : 회 (2)과태료 : 회 (3)고발·벌금 : 회 (4)과징금 : 회 (5)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 : 회	신청점수
5. 가점(3점)			
민간공사에서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실적(3점)		(1) 전체 민간공사 현장수 : (2)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임금지급한 현장수 : (3) 공사기간 개월수(임금지급 공사현장 평균값) : (4) 대금지급 개월수(임금지급 공사현장 평균값) :	신청점수
6. 신청점수 합계 점			
7. 작성자 직위: 성명: 전화번호: HP:			
<p>첨부서류 : 1. 업종별 협력업자 관리대상 2. 공동도급공사별 기성실적 현황 3. 업종별 협력업자별 하도급 기성실적 현황 4. 업종별 하도급 계약 및 기성실적 상세현황 5. 하도급대금 등 협력업자 재무지원 현황 6. 협력업자 지원 현황 7. 상생협업체 운영 현황 8.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관련 표창 현황 9. 제재처분 받은 현황 10. 해외공사 공동도급 등 동반진출 실적 현황 11.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한 임금지급 실적 현황 12. 기타 사실확인서류. 끝.</p>			

[별지 2호 서식]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신청서 [중소기업]			
신청인	①상 호		②대 표 자
	③본사소재지		④전 화 번 호
	⑤법인(주민)등록번호		⑥업종 및 등록번호
<p>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60호에 의거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에 관한 평가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국토교통부장관 귀하 (단위 : 백만원, %)</p>			
⑦총기성액(A)(국내분)			⑧총현장수(B)(국내분)
⑨총협력업자수계(D)			
1. 하도급실적(25점)			
총기성액 대비 협력업자와의 당년도 하도급기성실적 (25점)		(1)당년도 하도급기성액(G) : (2)총기성액 대비 비율(G/A) :	신청점수
2. 협력업자 육성(53점)			
가. 협력업자 재무지원 (40점)		(1)하도급대금 및 지급시기 등의 적정성 (30점) ①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15점) ②현금성 결제비율 (8점) ③하도급대금 조기지급 (5점) ④전자하도급계약 (2점) (2) 협력업자의 재무 (5점) 및 교육지원 (5점)	신청점수
나. 공동기술개발 및 기술지원(5점)		(1)기술개발비용 지원 (2)신기술·특허공법 공동개발 (3)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협력업체에 하도급 시공	신청점수
다. 상생협업체 운영 (5점)		(1)전체 현장수 대비 협업체 운영 현장수(2점) (2)협업체 운영실적(3점)	신청점수
라. 해외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 동반진출 실적 (3점)		(1)해외 동반진출 건수 : 건 * 3건 이상 3점, 2건 2점, 1건 1점	신청점수
3. 신인도 (22점)			
가.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과 관련하여 표창 등을 받은 실적 (2점)		(1)중앙행정기관의장 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표창(2점) : 회 (2)중앙행정기관의장의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2점) : 회 (3)시·도지사 표창(1점) : 회	신청점수
나. 공사대금의 적정 지급 또는 공사 하도급과 관련하여 처분 받은 실적 (20점)		(1)시정 권고·시정명령·지시 : 회 (2)과태료 : 회 (3)고발·벌금 : 회 (4)과징금 : 회 (5)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 : 회	신청점수
4. 가점(3점)			
민간공사에서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실적(3점)		(1)전체 민간공사 현장수 : (2)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임금지급한 현장수 : (3) 공사기간 개월수(임금지급 공사현장 평균값) : (4) 대금지급 개월수(임금지급 공사현장 평균값) :	신청점수
5. 신청점수 합계		점	
6. 작성자		직위:	성명: 전화번호: HP:
<p>첨부서류 : 1. 업종별 협력업자 관리대장 2. 업종별 협력업자별 하도급 기성실적 현황 3. 업종별 하도급 계약 및 기성실적 상세현황 4. 하도급대금 등 협력업자 재무지원 현황 5. 협력업자 지원 현황</p> <p>6. 상생협업체 운영 현황 7.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관련 표창 현황 8. 제재처분 받은 현황 9. 해외공사 공동도급 등 동반진출 실적 현황 10.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한 임금지급 실적 현황 11. 기타 사실확인서류. 끝.</p>			

[별지 3호 서식]

업종별 협력업자 관리대장								
평가신청업체		상호 :		대표자 :		업종 및 등록번호 :		
업종명								
NO	협력업자 등록일자	건설업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전년도 협력업자 여부
1								
2								
3								
4								
5								
6								
7								
8								
9								
10								
총 협력업자수					개사			

주) 1. “건설업등록번호”를 미기재 혹은 사실과 다른 경우 협력업자로 불인정.
 2. ‘전년도협력업자여부’는 직전년도 협력업자인 경우만 “O” 표시할것.

[별지 4호 서식]

공동도급공사별 기성실적 현황

평가신청업체		상호 :		대표자 :		업종 및 등록번호 :						
NO	신고번호 / 공사기간	공 사 명 / 발주자명	신청사의 당년도 기성액 (백만원)	공동수급자 중 협력업자인 업체					공동수급자 중 협력업자 아닌 업체			
				상 호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	협력업자 등록일자	전년도 협력업 자여부	당년도 기성액 (백만원)	상 호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	당년도 기성액 (백만원)	
1												
2												
3												
4												
5												
6												
7												
8												
9												
10												
총 공동도급기성실적 건수 :				/ 협력업자와 공동도급한 기성실적 건수 :								
협력업자와 공동도급한 자사 기성액 합계 :				/ 협력업자의 공동도급 기성액 합계 :								

- 주) 1. "업종 및 건설업등록번호"는 공동수급자의 업종 및 건설업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할 것
 주) 2. 이 서식은 신청자가 대기업인 경우만 작성·제출 (공동도급의 대표사가 아닌 경우도 반드시 작성·제출할 것)

[별지 5호 서식]

업종별 협력업자별 하도급 기성실적 현황					
평가신청업체	상호 :	대표자 :	업종 및 등록번호 :		
업종명					
No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건설업등록번호	하도급기성실적	
				건수	금액 (백만원)
1					
2					
3					
4					
5					
6					
7					
8					
9					
10					
합 계					

주) “건설업등록번호”를 미기재 혹은 사실과 다를 경우 하도급실적 불인정

[별지 6호 서식]

업종별 하도급 계약 및 기성실적 상세현황											
평가신청업체		상호 :		대표자 :			업종 및 등록번호 :				
업종명											
No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건설업 등록번호	협력업 자등록 일자	원도급공사				하도급공사		
					신고 번호	공사명	공사 기간	공동도 급분율 (%)	계약일 자 / 준공일 자	하도급 계약액 (백만원)	하도급 기성액 (백만원)
1											
2											
3											
4											
5											
6											
7											
8											
9											
10											
총 신규 하도급계약건수 :		/		총 하도급기성액 합계 :			백만원 /		총 하도급기성실적 건수 :		

주) 1. “건설업등록번호”를 미기재 혹은 사실과 다를 경우 하도급실적 불인정
 주) 2. 당년도 신규 하도급계약건이나 당년도 기성실적 발생건은 모두 입력할 것

[별지 8호 서식]

협력업자 지원 현황					
평가신청업체	상호 :	대표자 :	업종 및 등록번호 :		
지원분야명					
No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지원일자	지원내용	지원성과/효과
1					
2					
3					
4					
5					
6					
7					
8					
9					
10					
소 계	재무분야		개사		
	교육분야		개사		
	기술분야 (기술개발비용)		개사		
	기술분야 (공동기술개발)		개사		
	기술분야 (특허 또는 신기술보유 협력업체에 하도급시공)		개사		

[별지 9호 서식]

상생협약체 운영 현황

평가신청업체		상호 :	대표자 :	업종 및 등록번호 :					
No	계약년월	공 사 명	총계 약액	참여구성원(협력업자 등) 현황			운 영 실 적		
	준공년월	발주자명		상 호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	협력업자 등록일자	일 시 (협약체결 일, 회의일 등)	내 용	성과 / 효과
1									
2									
3									
4									
5									
6									
7									
8									
9									
10									
총 상생협약체 운영현장 수 :				/ 운영실적 있는 현장수 :					

[별지 12호 서식]

해외공사 공동도급 등 동반진출 실적 현황										
평가신청업체		상호 :			대표자 :			업종(등록번호) :		
No	해외공사 현황			협력업자				공동도급(하도급) 실적		
	발주자 (국가명)	공사명	계약일자 / 준공일자	동반진출 형태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중 한 가지 기재)	상 호	사업자 등록번호	건설업 등록번호	계약일자 / 준공일자	공동도급 (하도급) 총계약액 (백만원)	공동도급 (하도급) 당년도 기성액 (백만원)
1										
2										
3										
4										
5										
6										
7										
8										
9										
10										
협력업자와 동반진출 한 해외공사 건수 : 건										

주) 1. “건설업등록번호”를 미기재 혹은 사실과 다를 경우 해외 동반진출실적 불인정

<참고2>

평가 관련 기타 서식

<붙임2>

년도 기술개발비 수령 사실 확인서(예시)

1. 지급업체 (원도급업체)

회사명		대표자	
-----	--	-----	--

2. 수령내용

수령일자	세부내용	수령금액
합		계

우리 회사는 상기 금액을 20 년 기술개발비 항목으로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수령자(하수급인) 회사명 :
대표자 : (인)

공인회계(세무)사 상 호 :
대표자 : (인)

대한건설협회장 귀하

※붙임 : 공인회계사(또는 세무사) 등록증 사본 1부

<붙임3>

공사대금수령 및 하도급대금지급 내역서 (예시)										
1. 신청사 개요	상 호(대표자)		(인)			주업종 및 등록번호				
2. 원도급 내용 (단위: 백만원)										
계약내용	(신고번호) 공사명					공종				
	공사 기간	(계약년월) (준공년월)	총계약액 (자사분만)			당년도기성액 (자사분만)				
	공동 도급 현황	대표사상호 (대표자)		지분율(%) 또는 분담내용			도급금액 (자사분만)			
		구성사상호 (대표자)		지분율(%) 또는 분담내용			도급금액 (자사분만)			
공사진척 및 대금 수령내용	구 분	회 차	기성금액	기 성 검사일	결제 수단	수령일자	수령액	세금계산서 발행액		
	선급금									
	기성금									
	기성금									
	기성금									
	준공금									
계										
3. 하도급 내용 (단위: 백만원)										
계약내용	공종		업체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공사 (계약년월일) 기간 (준공년월일)		총계약액			당년도기성액				
하도급대금 현금성지급 유형			1)선급금 포함 하도급대금 직불 : 2)선급금 제외 하도급대금 직불 : 3)하도급 대금 100% 현금성결제수단 지급 : √ 4)어음, 현금을 혼용하여 지급 :							
공사진척 및 대금 지급내용	구 분	회 차	기성금액	기 성 검사일	결제수단*	지급일자	지급액	세금계산서 발행액		
	선급금									
	기성금									
	기성금									
	기성금									
	준공금									
계										

* 결제수단은 현금, 수표, 기업구매카드, 구매론, 외담대, 현금과 어음혼용 중 택1

건설산업 상생협의체 협정서(예시)

제1조 (목적)

이 협정은 건설현장에서의 상생협력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발주자, 원도급업체, 하도급업체간 현장별 상생협의체(이하 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과 업무내용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이 협정은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제3조 (구성)

- ① 협의체는 발주자 ○○, 원도급업체 ○○, 하도급업체 ○○, ○○, ○○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은 발주자 ○○, 원도급업체 ○○, 하도급업체 ○○, ○○, ○○의 관련 인원(별지 참조)으로 하고, 위원장은 발주자의 ○○장, 간사는 발주자 ○○의 ○○장으로 한다.

제4조(업무범위)

- ① 위원장은 협의체 운영주관 등 회의를 총괄한다.
-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부재시 회의를 주관하며 운영일지 및 회의록을 관리한다.
- ③ 각 위원은 성공적인 상생협력 증진을 위하여 상생협력 과제의 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제5조(협의체 운영)

협의체 회의는 발주처 위원이 참가하는 월간회의 (매월 ○○일) 및 발주처 위원이 참가하지 않는 주간회의를 개최하되, 주간회의는 공정 회의 등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시회의를 개최한다.

제6조(협의체 역할)

협의체는 “상생협력매뉴얼”에 규정된 역할을 수행한다.

제7조(자료제출)

① 위원장은 건설공사 계약과 함께 협의체 협정서를 체결하고 체결 즉시 발주처 ○○에 제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결과(회의록 첨부)를 매월 ○일까지 발주자 ○○에 제출한다.

○ 발 주 자 : 000 개발팀장 000 (인)

○ 원수급자 : 0000 현장대리인 000 (인)

○ 하수급자 : 0000 현장소장 000 (인)

○ 하수급자 : 0000 현장소장 000 (인)

○ 하수급자 : 0000 현장소장 000 (인)

○ 하수급자 : 0000 현장소장 000 (인)

<붙임5>

상생협의회체 월간/주간회의 운영일지(예시)

발 주 자		기록일자	년 월 일(요일)	<input type="checkbox"/> 월간회의 <input type="checkbox"/> 주간회의	
공사현장명					
회의일시		장 소		주재자	
제기된 문제점 및 조치사항					
하도급 점검사항	①대금지급보증서 발급	<input type="checkbox"/> 발급 <input type="checkbox"/> 미발급 <input type="checkbox"/> 면제 <input type="checkbox"/> 직접지급	③설계변경에 등에 따 른 대금 조정	<input type="checkbox"/> 조정 <input type="checkbox"/> 미조정	
	②기성(준공)금 지급	<input type="checkbox"/> 지급 <input type="checkbox"/> 미지급	④하자보증기간의 적정성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type="checkbox"/> 미적정	
참석자 명단					
소속	직위	성명/서명	소속	직위	성명/서명

<붙임6>

현장별 상생협력 추진실적 평가표(예시)

평가일시	년 월 일 (요일)	평가자	원수급인 (인)
공사명		계약년월일 준공년월일	
상생협업체 구성원	발주자 : 원수급인 : 하수급인 :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	등급 및 기준					평점
			우수 (1.0)	양호 (0.9)	보통 (0.8)	미흡 (0.7)	불량 (0.6)	
최종평점								
계		100						
상생 분위기 조성 (20)	• 부서장의 경영방침	5						
	• 상생협력시행계획의 적정성	7						
	• 대내외홍보 및 언론보도 활동 노력도	3						
	• 행정사항(지시사항 등) 이행 충실도	5						
재무지원 (35)	• 재무지원 건수	10						
	• 재무지원의 실효성	15						
	• 재무지원의 타 현장 적용성	10						
기술지원 (25)	• 기술지원 건수	10						
	• 기술지원의 실효성 및 적정성	10						
	• 타 현장의 적용성	5						
교류확대 (20)	• 교류확대 건수	5						
	• 교류확대 실효성 및 적정성	10						
	• 타 현장의 적용성	5						
운영성과 요약	※ 입증서류 붙임 참조							
		확인자	발주자(감독자) :				(서명 또는 인)	

< 참고3 >

2019년도 평가시 변경되는 사항

2019년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세부평가기준(변경사항)

1 경 위

- '18.10.23, 국토부는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 등을 위해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기준」을 개정·고시함에 따라 이에 따른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함
※ '19. 1. 1.부터 시행 ('20년 평가시부터 적용)

2 주요 변경내용

- 하도급실적의 평가기준 비율 하향 ☞ 붙임1 참조
- 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배점 축소 ☞ 붙임2 참조
- 하도급 낙찰률 평가항목 신설 ☞ 붙임3 참조
- 전자하도급 계약 배점을 확대(2점→4점)하고 인정기준 강화 ☞ 붙임4 참조
- 전자하도급계약 관련 재무지원 인정기준 강화 ☞ 붙임5 참조
- 교육지원 인정범위에 건산법상 '건설업 윤리 및 실무관련 교육' 포함 ☞ 붙임6 참조
- 상호협력 표창 배점을 확대(2점→3점) ☞ 붙임7 참조
-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는 건설업체 및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신인도 감점 항목 신설 ☞ 붙임8 참조
-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활용실적 인정범위에 자재·장비대금 추가 ☞ 붙임9 참조
- 해외건설 동반진출 실적(3점)을 배점에서 가점으로 전환 ☞ 붙임10 참조

3 평가항목 배점 변경

평가항목		배점(현행)		배점(개정)		비고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1. 공동도급 실적		10점	-	10점		
가. 협력업자와 공동도급한 기성실적 건수 비율		(5점)		(5점)		
나. 협력업자의 공동도급 참여율		(5점)		(5점)		
2. 하도급 실적		20점	25점	20점	25점	평가비율 하향
- 총기성액 대비 협력업자의 하도급기성실적 비율						
소 계		58점	53점	57점	52점	
3. 협력업자 육성	가. 협력업자 재무지원	40	40	42	42	배점축소 신 설 배점확대 기준강화 기준강화 윤리교육신설
	(1) 하도급대금지급 및 지급시기 등 적정성	30점	30점	32점	32점	
	① 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15점)	(15점)	(10점)	(10점)	
	② 하도급 낙찰률	-	-	(5점)	(5점)	
	③ 하도급대금 현금성결제비율	(8점)	(8점)	(8점)	(8점)	
	④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5점)	(5점)	(5점)	(5점)	
	⑤ 전자하도급계약	(2점)	(2점)	(4점)	(4점)	
	(2) 협력업자 재무·교육 지원	10점	10점	10점	10점	
	① 재무분야 (최소1백만원이상 지원)	(5점)	(5점)	(5점)	(5점)	
	② 교육분야	(5점)	(5점)	(5점)	(5점)	
나. 협력업자와 공동기술 개발 및 기술 지원		10점	5점	10점	5점	
다. 상생협업체 운영		5점	5점	5점	5점	
4. 신인도		12점	22점	13점	23점	
가.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과 관련하여 표창 등을 받은 실적		(2점)	(2점)	(3점)	(3점)	배점확대
나. 공사대금 적정지급 또는 하도급 관련 제재받은 실적 (없으면 기본점수, 감점)		(10점)	(20점)	(10점)	(20점)	
다. 부당내부거래, 갑질, 부실시공 등으로 제재받은 실적 (감점)		-	-	(10점)	(10점)	신 설
5. 가점		+3점	+3점	+6점	+6점	
가. 전자적 대금시스템 활용 임금·대금지원		(3점)	(3점)	(3점)	(3점)	범위확대
나. 해외건설 공동도급 등 동반진출 실적				(3점)	(3점)	배점→가점
총 계		100점	100점	100점	100점	

붙임1 하도급실적 (평가기준 비율 하향)

산정방법	대기업		중소기업	
	평가기준	점수	평가기준	점수
협력업자의 하도급기성실적 ²⁾ 총기성실적 ¹⁾	45%이상	20	40%이상	25
	35%~45%미만	15	30%~40%미만	20
	25%~35%미만	10	20%~30%미만	15
	15%~25%미만	5	10%~20%미만	10
	15%미만	0	10%미만	0

1) '총기성실적' 판단기준 (현행과 동일)

- 건설공사 실적신고('19.2월)시 협회에 제출하여 평가받은 자료에 따라 '국내기성액 합계' 금액으로 평가('18.5월말 확정)
- 종합건설업자간 하도급기성실적이 '협력업자의 하도급기성실적'에 포함되는 경우, 동일 금액을 총기성실적에도 추가하여 산정

2) '협력업자의 하도급 기성실적' 판단기준 (현행과 동일)

- 당년도에 협력업자 등록 후 그 협력업자와 신규 하도급 계약 체결 및 기성실적이 발생한 분을 평가
 - 하도급 기성실적에 대한 당년도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으로 산정
 - 당년도에 원도급공사가 준공된 경우, 하도급실적은 익년도 1분기 매 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상의 금액까지 인정 가능
 - 공동이행방식인 공동도급의 하도급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분에 자사지분율을 적용하여 해당 부분만을 인정
 - 당년도에 원도급공사건의 기성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 하도급실적은 제외
 - 제외된 하도급 실적은 익년도에 원도급공사 기성실적이 발생하는 경우에 익년도 하도급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가능
- ※ 원도급 기성실적 없는 하자보수 하도급계약 건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협력업자가 직전년도 및 당년도에 모두 협력업자인 때에 한하여 ‘협력업자의 하도급 기성실적’으로 인정
 - 당년도 신규계약 체결분인 경우로서 당년도 협력업자로 등록하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
 - 당년도 이전에 하도급계약 체결분인 경우로서 당년도에 하도급 기성실적이 발생한 경우
- 자기건설공사에 대한 협력업자의 기성실적도 하도급 기성실적으로 인정

사실확인용 제출서류

- ㉠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자사의 “해당년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원본)
 - 거래기간을 1.1~12.31으로, 연간기준으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할 것
- ㉡ (공동도급의 하도급계약인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사본
 - 공동도급 대표사, 구성원사 모두 제출
- ㉢ (공동도급 “구성원사”로서의 하도급계약인 경우) 다음 중 **택일 제출**
 - 공동도급 대표사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해당부분에 밀줄표시)
 - 협력업체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
 - 개별공사건별 하도급공사대장(Kiscon 통보) 출력물

붙임2 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점수 축소]

구분	산정방법	평가기준	점수
가. 하도급률 적정 하도급건수 비율	$\frac{\text{총 대금 적정 지급 하도급건수}^{2)} }{\text{총 신규 하도급건수}^{1)}$	70%이상	10
		50%~70%미만	8
		30%~50%미만	6
		10%~30%미만	4
		10%미만	0
나. 하도급률 적정 하도급건수	총 대금 적정지급 하도급건수 ²⁾	120건이상	10
		80건~120건미만	8
		50건~80건미만	6
		30건~50건미만	4
		30건미만	0

■ ‘가’, ‘나’ 중 점수가 높은 쪽으로 선택 적용

1) ‘신규 하도급 건수’의 판단기준 (현행과 동일)

- 당년도 협력업자의 신규 하도급계약의 건수를 합산하여 산정

2) ‘대금 적정 지급 하도급 건수’ 판단기준 (현행과 동일)

- 1)에 따른 ‘신규 하도급 건수 중 발주자 및 하도급업자가 ‘하도급률’이 적정하다고 확인한 하도급건수

- 단,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하도급업자의 확인 없이 해당 하도급계약의 건수를 ‘하도급대금 적정 지급 하도급건수’로 인정

※ 공공발주자는 하도급률이 일정 수준 이하인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하도급계약 적정 여부를 심사(건설법 제31조제2항)

☞ **하도급률이란**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79호('16.10.12) >

- ▷ “하도급계약금액”을 “하도급부분금액”으로 나눈 비율
- ▷ “하도급부분금액”은 하도급하고자 하는 공사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 ▷ “하도급계약금액”은 수급인이 하수급자와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

사실확인용 제출서류

A. 공공공사의 경우

- 보증기관이 발행한 하도급 계약이행보증서, 대금지급 보증서 등 계약사실 확인서류(Kiscon 건설공사대장의 경우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 가능)

B. 민간공사의 경우

- ㉠ 보증기관이 발행한 하도급 계약이행보증서, 대금지급 보증서 등 계약사실 확인서류(Kiscon 건설공사대장의 경우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할 것)
- ㉡ 하도급률 확인서 (붙임 양식 참조)

⇒ ㉠, ㉡을 1set로 제출

붙임3 하도급 낙찰률 (평가항목 신설)

산정방법	평가기준 ³⁾	점수
협력업자의 하도급계약액 총액 ²⁾ 도급금액 중 협력업자 하도급부분 금액 총액 ¹⁾	90%이상	5
	86%이상 ~ 90%미만	4
	82%이상 ~ 86%미만	3
	82%미만	2

1) '도급금액 중 협력업자 하도급부분금액 총액'의 판단기준

- 당년도에 협력업자와 신규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해당 하도급부분금액*을 합산하여 산정
- *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통보서 상의 하도급부분금액으로서, 하도급 하고자 하는 공사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2) '협력업자의 하도급계약액 총액' 판단기준

- '협력업자의 하도급 기성실적'으로 인정된 당년도 신규 하도급계약의 계약액을 합산하여 산정
- 당년도 하도급 기성실적이 '0'인 협력업자와의 하도급계약건도 포함

3) 평가기준

- 산정방법의 산식에 따라 산출된 하도급 낙찰률을 기준으로 점수 부여
 - 단, 82% 미만인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 지급액의 적정성이 인정된 공사가 전체 신규 하도급계약 공사건수의 7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2점 부여
 - * 「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항목에서 '하도급률 적정 하도급건수 비율'에 따라 평가된 비율을 적용하여 판단

사실확인용 제출서류

- ㉠ 보증기관이 발행한 하도급 계약이행보증서, 대금지급 보증서 등 계약사실 확인서류(Kiscon 건설공사대장의 경우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할 것)
- ㉡ 하도급률 확인서 (붙임 양식 참조)

⇒ ㉠, ㉡을 1set로 제출

붙임4 전자 하도급계약 [배점 확대, 인정기준 강화]

산정 방법	평가기준	점수
$\frac{\text{총 전자 하도급계약건수}^{2)}}{\text{총 신규 하도급건수}^{1)}}$	50%이상	4
	40%이상~50%미만	3
	30%이상~40%미만	2
	20%이상~30%미만	1
	20%미만	0

1) '총 신규 하도급건수'의 판단기준 (현행과 동일)

- 당년도 협력업자의 신규 하도급계약의 건수를 합산하여 산정

2) '총 전자하도급계약건수'의 판단기준

- 1)에 따른 '신규 하도급건수' 중 전자문서용 인지세가 납부된 전자하도급계약의 건수를 합산하여 산정
- 공동이행방식인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가 체결한 전자하도급계약 건에 대하여 구성사도 동일하게 적용

☞ 전자하도급계약

- ▷ 현행 오프라인 방식으로 처리하던 하도급계약서의 작성, 체결, 관리 등 일련의 계약업무를 공인인증서 기반의 양방향 전자서명 및 암호화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방식
- ▷ 원·하도급업체가 직접방문 없이 양사간 전자서명에 의해 전자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사후에도 해당 하도급계약건을 조회 및 출력 가능

사실확인용 제출서류

- ㉠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포함하는 전자 하도급계약서
- ㉡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납부 확인증 (또는 자사의 인지세 납부금액 확인가능 서류)

☞ ㉠, ㉡을 1set로 제출

- ※ 나이스다큐 전자조달시스템(www.nicedacu.com)을 통한 전자 하도급계약의 경우 사실확인 서류 제출 불필요

붙임5 협력업자 재무지원 (인정기준 강화)

구 분	산정방법	평가기준	점수 ³⁾
가. 재정지원한 협력업자 업체수 비율	$\frac{\text{재정지원한 협력업자 업체수}^{2)}}{\text{총협력업자 업체수}^{1)}}$	60%이상	5
		40%이상~60%미만	4
		20%이상~40%미만	3
		10%이상~20%미만	2
		10%미만	0
나. 재정지원한 협력업자 업체수	재정지원한 협력업자 업체수 합산	100개 이상	5
		70개 이상~100개 미만	4
		40개 이상~70개 미만	3
		20개 이상~40개 미만	2
		20개사 미만	0

▣ ‘가’, ‘나’ 중 점수가 높은 쪽으로 선택 적용

1) ‘총협력업자 업체수’의 판단기준 (현행과 동일)

- 자사에 등록된 협력업자의 총 업체수
 - 1개 업체가 다수의 공사업종별로 협력업자를 등록한 경우라도 업체수는 1개로 판단

2) ‘재정지원한 협력업자 업체수’의 판단기준 (현행과 동일)

- 1개 협력업자 업체별 최소 ‘1백만원 이상’, ‘1회 이상’ 재정 지원한 협력업자 업체수를 합산
 - 하나의 협력업자와 다수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해당 업체에 지원된 금액이 ‘1백만원 이상’이면 재정지원 업체수에 포함
- 당년도 해당 협력업자와의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무 지원시 인정 가능

☞ 재무지원 인정 유형 (변경)

- ① 협력업자에게 업체당 하도급대금외 1백만원 이상의 현금 또는 현물 (기자재 등)을 지급한 경우
- ② 발주자로부터 선금금, 기성금, 준공금 등 공사대금을 전혀 수령하지 않고 1백만원 이상 하도급대금을 현금성결제수단으로 선지급한 경우
- ③ 전자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된 협력업체의 인지세 지원금액이 1백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인지세액 중 70%이상을 자사가 부담한 경우

- 하도급계약액 1천만원 이상 : 지원금액 6만원
- 하도급계약액 3천만원 이상 : 지원금액 12만원
- 하도급계약액 5천만원 이상 : 지원금액 20만원
- 하도급계약액 1억원 이상 : 지원금액 50만원
- 하도급계약액 2억원 이상 : 지원금액 120만원

※ 공동이행방식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수급체가 계약한 총하도급계약액 기준으로 하며, 대표사 및 구성사 모두 재무지원 협력업체수 인정

(예시) 협력업체 A사와 철콘 하도급계약액 2억, 토공 하도급계약액 0.6억으로 총 하도급계약액이 2.6억인 경우, 신청사가 인지세(15만원, 7만원) 중 15.4만원 이상 (22만원×70%)에 대해 자사가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해야 재무지원한 것으로 인정

- ④ 하도급대금을 지급보증하고 하도급계약이행보증서 발행을 면제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된 협력업체별 수수료 등 지원금액이 1백만원 이상인 경우
- 하도급계약액 4천만원 이상 : 지원금액 12만원
 - 하도급계약액 5천만원 이상 : 지원금액 20만원
 - 하도급계약액 1억원 이상 : 지원금액 50만원
 - 하도급계약액 2억원 이상 : 지원금액 120만원

※ 공동이행방식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수급체가 계약한 총하도급계약액 기준으로 하며, 대표사 및 구성사 모두 재무지원 협력업체수 인정

사실확인용 제출서류

재무지원 유형	제출서류
업체당 하도급대금 외 1백만원 이상의 현금 또는 현물(기자재 등) 지급	㉠ 원·하도급 업체의 법인 통장사본, 입금증 등 금융기관 서류 ㉡ 사유서(별도 양식은 없으며, 내용·날짜·금액이 명시되고 원·하도급사 날인한 원본 제출)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기성금을 수령하지 않고 1백만원 이상 하도급대금을 현금성결제수단으로 선지급	㉠ 원·하도급 업체의 통장사본, 입금증 등 금융기관 서류 ㉡ KISCON 건설공사대장 (원도급금액이 1억 미만인 경우 원·하도급계약서)
협력업체와의 하도급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체결	㉠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포함하는 전자 하도급계약서 ㉡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납부 확인증 (또는 자사의 인지세 납부금액 확인가능 서류) ㉢ 자사의 인지세(70% 이상) 납부 확인서류
협력업체와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 보증하고 하도급 계약이행보증서 발행을 면제	㉠ 원도급 및 하도급 계약서 사본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 하도급사의 하도급이행보증서 발행 내역 ㉣ 보증서 면제 사유서

붙임6 협력업자 교육지원 (인정과정 및 기준 추가)

구 분	산정방법 ⁴⁾	평가기준			점수	
가. 교육에 참가한 협력업자 업체수 비율	교육을 지원한 협력업자 업체수 ²⁾ 총협력업자 업체수 ¹⁾	60%이상			5	
		40%이상~60%미만			4	
		20%이상~40%미만			3	
		10%이상~20%미만			2	
		10%미만			0	
나. 교육에 참가한 협력업자 임직원수	지원 교육에 참가한 총 협력업자의 임직원수 ³⁾	협력업체 1,000개사 이상	협력업체 500개사 이상	협력업체 500개사 미만	/	
		200인 이상	159인 이상	120인 이상		5
		160~199인	120~159인	70~119인		4
		120~159인	80~119인	40~69인		3
		80~119인	40~79인	20~39인		2
		80인 미만	40인 미만	20인 미만		0

▣ ‘가’, ‘나’ 중 점수가 높은 쪽으로 선택 적용

1) ‘총협력업자 업체수’의 판단기준 (현행과 동일)

- 자사에 등록된 건설업종별 협력업자의 총 업체수
 - 다수의 공사업종을 등록한 하나의 협력업자인 경우 업체수는 1개로 판단

2) ‘교육을 지원한 협력업자 업체수’의 판단기준 (현행과 동일)

- 다음의 ‘협력업자 교육 인정기준’에 따른 위탁교육(㉠)을 지원한 협력업체 수 합산
- 한 협력업체 소속 임직원 여러명이 다수의 ‘위탁교육’ 과정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업체수는 1개로 인정

※ (사례1) 토공사업자 ‘A건설(주)’과 포장공사업자 ‘A건설(주)’를 각각 협력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2회에 걸쳐 교육 지원한 경우, 교육지원 업체수는 1개에 해당

(사례2) 협력업체 토공사업자 ‘A건설(주)’ 소속 직원 2인을 교육 지원하더라도 업체수는 1개에 해당

3) '지원 교육에 참가한 총 협력업자의 임직원수'의 판단기준 (현행과 동일)

- 다음의 '협력업자 교육 인정기준'에 따른 위탁교육(㉞)을 지원한 임직원수 합산
※ (사례1) 협력업체인 토공사업자 'A건설(주)' 소속 임직원 2인에 대해 교육지원한 경우 2명에 해당
(사례2) 협력업체 토공사업자 'A건설(주)' 소속 임직원 1인을 여러번 교육지원한 경우 1명에 해당

4) '산정방법'에 따라 산출시 우대사항

- 상반기(1~8월) 교육 참여시 '2)교육을 지원한 협력업자 업체수' 및 '3)지원 교육에 참가한 총 협력업자의 임직원수'에 가중치 1.2배 적용(소수점이하 절사) 하여 합산 (현행과 동일)
- 다음의 '협력업자 교육 인정기준'에 따른 법정윤리교육(㉟)에 신청업체 소속 임직원 또는 협력업체의 임원이 참여하는 경우, 전체 참여 인원수의 3배를 '2)교육을 지원한 협력업자 업체수' 또는 '3)지원 교육에 참가한 총 협력업자의 임직원수'에 합산

< 예시 1 >

총협력업체 법인수 100개사이며, 상반기에 위탁교육 과정에 참여한 협력업체수가 20개사, 상반기에 법정윤리교육에 참여한 임직원수 10명인 경우

가. 교육에 참가한 협력업자 업체수 비율

$$= \frac{24(= 20 \times 1.2\text{배}) + 36(= 10 \times 1.2\text{배} \times 3\text{배})}{100} = 60\% \Rightarrow 5\text{점}$$

< 예시 2 >

총협력업체 법인수 1000개사이며, 하반기에 위탁교육 과정에 참여한 협력업체수가 20개사, 상반기에 법정윤리교육에 참여한 임직원수 50명인 경우에는

나. 교육에 참가한 총 협력업자의 임직원수

$$= 20\text{명} + 180\text{명}(=50\text{명} \times 1.2\text{배} \times 3\text{배}) = 200\text{명} \Rightarrow 5\text{점}$$

☞ **협력업자 교육 인정기준**

① **교육기관 및 교육훈련 과정** (㉠, ㉡ 중 선택 가능)

구분	㉠ 중앙행정기관이 승인한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이하 '위탁교육')	㉡ 건설업윤리 및 실무관련 교육과정 (이하 '법정윤리교육')
교육 대상	협력업체 임원 또는 직원	신청업체 자사 임직원 또는 협력사의 임원
교육 기관 및 과정	<p>교육부 인정 평생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또는 고용노동부의 HRD-Net에 등록된 교육훈련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자 승급교육, 기사자격증 취득 교육, 정기 안전교육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교육은 불인정 - 「건설법」, 「하도급법」 과목을 각각 1시간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수료증에 교육과정명이 명기되어야 함 - 온라인과정은 고용노동부의 교육비 환급과정* 이수한 경우만 인정 <p>* http://www.hrd.go.kr 훈련정보(기업과정) 중 “건설” 직종에서 검색</p>	<p>건설법 제9조의3에 따른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의 건설업윤리 및 실무관련 교육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공제조합, 건설기술교육원, 건설산업교육원, 한국열관리시공협회에서 실시하는 법정윤리교육</u> - <u>신규 건설업자의 의무교육 이수 또는 영업정지 업체가 영업정지기간을 감경받기 위해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는 불인정</u>

② **'교육실비 등 지원'** (현행과 동일)

- 원도급업체가 교육기관에 실제 납부한 교육비를 해당 교육기관에 직접 지급하든, 협력업체를 통해 지급하든 모두 인정
- 협력업체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참가한 교육과정 시작일 기준 전후 3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공동이행방식인 공동도급에 있어 공동수급체 차원에서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대표사 및 구성사 모두가 해당 협력업체를 교육지원한 것으로 인정 가능하나, 구성사별 각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교육비 지원이 확인되어야 함

사실확인용 제출서류

- ㉠ 교육참가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중 택1 (재직여부 확인)
- ㉡ 교육기관등록증 사본 또는 교육기관 확인서(적정 교육기관 여부 확인)
 - 온라인 교육인 경우 교육훈련과정 인정서(HRD-Net상 화면캡처 출력물)
- ㉢ 교육기관이 발행한 교육수료증
(교육비 납부내역, 참석자, 교육내용, 수료여부 등 확인 가능 서류)
- ㉣ 자사가 협력업체에게 직접 교육비를 지원한 경우로서 교육수료증을 통해 신청사의 교육지원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사실 확인 가능 서류
(교육비 이체 통장사본 등)
- ㉤ 공동도급의 경우로서 ㉡ 또는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공동수급체가 교육지원 하였음을 입증하는 사실확인 서류

☞ ㉠, ㉡, ㉢, ㉣, ㉤을 1set로 제출

- ㉠, ㉡, ㉢을 같음하여 '훈련수료자보고서' 제출 가능 (고용노동부 환급 과정을 수료한 경우 발급 가능)
 - 법정윤리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는 ㉡만 제출
-

붙임7 상호협력 관련 표창 등을 받은 실적 (배점 확대)

평가항목 ¹⁾	점수 ²⁾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표창, 중앙행정기관장의 모범업체 선정 1회	<u>3</u>
시·도지사 표창 1회	<u>2</u>

1) 평가항목에 대한 판단기준 (현행과 동일)

- 당년도에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과 관련하여 표창을 수상하거나, 모범업체에 선정된 경우 인정
- 대표자 또는 업체에 대한 표창 수상 등의 경우에만 인정되며, 현장소장 등 소속 임직원이 표창을 수상한 경우에는 불인정
-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외 기타 공공기관장, 시·군·구청장 등 기초자체단체장의 표창 수상은 불인정

2) 점수 산정방법

-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경우에도 최대 3점까지 인정

사실확인용 제출서류

- 표창장 등 수상실적 증빙서류 사본

붙임8 제재처분 감점 (처분 원인행위 추가)

구분	제재처분 ¹⁾ 원인행위	평가기준 (처분유형)	감점 ²⁾
부실시공, 부당내부거래, 갑질, 공사대금의 적정지급, 공사하도급 관련	- <u>건설법 제82조제2항제5호, 제83조제10호 관련</u>	<u>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지시 1회</u>	<u>-1/-2</u>
	- 건설법 제25조제2항, 제29조~제38조 관련	과태료 1회	-2
	- 하도급법 관련	벌금 또는 고발 1회	-3
	- <u>공정거래법 제23조~제23의3 관련</u>	과징금 1회	-5
	-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1호·제3호· 제5호·제6호,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1호·제2호· 제3호 관련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1회	-10

1) ‘제재처분’의 판단기준 (현행과 동일)

- 당년도에 공사대금의 적정지급 또는 공사하도급, 부당내부거래, 갑질, 부실시공 관련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정 (처분일 기준)
- 집행정지 가처분 등을 받거나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 대상에서 제외

2) 점수 산정방법

- 제재처분 원인 행위가 관련법령 및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 평가기준에 따라 처분유형별 감점을 모두 누계하여 대기업은 10점, 중소기업은 20점에서 차감하여 잔여점수 부여
-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지시를 받은 경우, 부실시공, 부당내부거래, 갑질 관련은 1회당 **2점**, 그 외 공사대금의 적정지급, 공사 하도급 관련은 **1점 감점**
 - 제재처분 원인 행위가 건설법 제82조제2항제5호, 제83조제10호, 하도급법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의3제3항, 제19조, 공정거래법 제23조~제23조의3 관련인 경우 2점 감점
- 건설법 상 “하도급통지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받은 건 중 하도급계약 지연통보(하도급계약 후 30일 이후 통보) 또는 변경사항 미통보의 경우 1점만 감점 (현행과 동일)

사실확인용 제출서류

- 별도 추가 제출서류 없음 (국토부, 조달청 등을 통해 협회에서 직접 확인)

붙임9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활용 지원 (적용대상 확대)

산정 방법	평가기준 ⁵⁾			
	대기업	가점	중소기업	가점
$\frac{\text{시스템을 통한 임금 등 지급 민간공사 현장수}^2)}{\text{전체 민간공사 현장수}^1)} \times$	70%이상	+ 3.0	60%이상	+ 3.0
	60%~70%미만	+ 2.5	50%~60%미만	+ 2.5
	50%~60%미만	+ 2.0	40%~50%미만	+ 2.0
$\frac{\text{시스템을 통한 임금 등 지급 개월수 평균값}^4)}{\text{시스템 활용현장의 총공사개월수 평균값}^3)}$	40%~50%미만	+ 1.5	30%~40%미만	+ 1.5
	30%~40%미만	+ 1.0	20%~30%미만	+ 1.0
	20%~30%미만	+ 0.5	10%~20%미만	+ 0.5

1) '전체 민간공사 현장수' 판단기준 (현행과 동일)

- 당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서 협회에 제출한 모든 '민간공사' 중 당년도 기성실적이 있는 현장수를 누계하여 산정
 - 단, 원도급 공사금액이 5천만원 미만, 공사기간이 30일 이내, 하도급대금 직불 현장은 제외

☞ 민간공사의 범위

-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서 발주한 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사

2) '시스템을 통한 임금 등 지급 민간공사 현장수' 판단기준

- 1)의 민간공사 현장 중 원수급인이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협력사의 건설근로자 등에게 임금 및 자재·장비대금을 지급한 현장수 누계
- 공동이행방식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건설근로자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구성사도 동일하게 적용
- 1개 원도급공사 현장에 대해 여러 건의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하도급기성이 발생한 '모든' 하도급계약 건에 대해, 현장내 '모든' 건설근로자*에게 임금 지급한 경우에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현장별 월별 퇴직공제 납입확인서 또는 건강보험가입 확인서로서 현장내 건설근로자수 확인

3) '시스템 활용 현장의 총공사개월수 평균값' 판단기준

- 2)의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활용 공사현장'별 '공사개월 수'를 모두 누계한 후 그 평균값으로 산정
- '공사개월 수'는 당년도 협회 건설공사 실적신고서 제출한 자료의 계약 연월, 준공(예정)연월을 기준으로 계산
 - 단, 계약일이 금년도 평가대상년도 기간(1.1.~12.31.)이전이면 1.1.부터, 준공연월이 금년도 평가대상년도 기간(1.1.~12.31.) 이후면 12.31.까지로 설정

4) '시스템을 통한 임금 등 지급 개월수 평균값' 판단기준

- 3)의 공사개월수 중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실제 임금 및 자재·장비대금이 지급된 대상월(기성월) 수를 누계한 후 그 평균값으로 산정
 - 단,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대상월의 임금 등이 지급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다수의 협력업자 현장에서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이 최초로 지급된 현장과 마지막으로 지급된 현장의 시작월과 종료월로 각각 적용하여 개월수 산정 가능

5) 평가기준 적용방법 (현행과 동일)

- 평가산식에 따른 실적비율(백분율)에 따라 최대 3점의 '가점' 부여
 - 단, 총평가점수 100점을 한도로 가점 적용
- 실적비율 산정시 소수 첫째자리(미만절사)까지 산출

☞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인정요건

- ▷ 원수급인이 지급한 임금 및 자재·장비대금에 대해 근로자, 자재·장비업자 계좌로의 송금만 허용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협력업자의 계좌를 통해 임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에 대해 협력업자의 인출 제한기능을 갖출 것(에스크로계좌 등 활용)
 - 다만, 협력업자 동의하에 종합건설업자가 협력업자 에스크로계좌를 통하지 않고 직접 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 계좌로 지급하는 경우도 인정
- ▷ 원수급인이 지급할 임금 및 자재·장비대금에 대해 협력업자의 대금청구 및 승인기능이 있어야 하며, 원수급인 및 협력업자가 청구·승인 및 지급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해야 함
- ▷ 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문자 등으로 임금 및 대금 지급을 알리는 기능을 갖출 것

※ 필요시 평가기관에서 운용 중인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에 대해 검증을 실시할 수 있음

사실확인 서류

- ㉠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화면캡처 출력물
 - 종합건설업체명, 현장명, (임금·자재·장비대금 지급)대상월, 월별 지급일자, 월별 지급건수 (근로자수, 자재·장비업체수 포함)
 - ㉡ 공동수급협정서 사본
 - (공동도급의 구성사로 참여한 경우, 대표사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한 경우에 한함)
 - ㉢ 현장별 월별 퇴직공제 납입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가입 확인서 (현장근로자수 확인용)
- ⇒ 현장별로 ㉠,㉡,㉢을 1set로 제출

붙임10**해외건설 동반진출 실적 (배점을 가점으로 전환)**

평가항목	평가기준		가점 ³⁾
	대기업	중소기업	
해외건설공사 ¹⁾ 로서 협력업자와 동반진출한 건수 ²⁾	5건 이상	3건 이상	+3
	3~4건	2건	+2
	1~2건	1건	+1

1) ‘해외건설공사’의 판단기준 (현행과 동일)

- 2018년도 협회(전문협회 포함)에 제출한 건설공사 실적신고건 중 당년도에 해외에서 기성실적이 발생한 공사

2) ‘협력업자와 동반진출한 건수’의 판단기준 (현행과 동일)

- 자사가 해외공사 진출시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의 형태로 협력업자와 동반 진출한 건수
- 하나의 해외건설공사 현장에서 여러 협력업체와의 동반진출 실적이 발생한 경우에도 1건으로 인정함
 - 수년에 걸쳐 이루어지는 공사인 경우에도 1회에 한해 건수 인정
- 공동이행방식인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가 체결한 하도급 동반진출 건은 구성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3) 가점 점수 산정방법

- 동반진출 건수에 따라 최대 3점의 ‘가점’ 부여
 - 단, 총평가점수 100점을 한도로 가점 적용 가능

사실확인 서류

※ 별도 추가 제출서류 없음(‘해외건설협회’에 신고·확인된 실적을 통해 평가)